



2015년 업무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성장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금융업을 만들겠습니다.

2015. 1.



금융위원회



## 목 차

I. 지난 2년간 금융정책 평가	1
1. 창조금융 인프라 구축	2
2. 금융혁신 실천	4
3.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5
4. 금융시스템 안정	7
II. 2015년 금융정책 여건 및 방향	12
1. 2015년 금융정책 여건	13
가. 대외 리스크 요인 및 전망	13
나. 대내 리스크 요인 및 전망	15
2. 2015년 금융정책 방향	22
III. 2015년 금융정책 세부 실천계획	25
1. [핵심과제 1] 창조금융 성과확산	26
①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IT·금융융합	27
②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등 자금중개기능 강화	34
③ 금융개혁 추진 등 금융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41
2. [핵심과제 2] 금융시장 신뢰확립	48
④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49
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55
⑥ 금융부문 신뢰 제고	60

3. [핵심과제 3] 금융안정 강화 .....	64
⑦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	65
⑧ 상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대응 .....	69
⑨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	73
IV. 금융 규제개혁 현황과 성과 .....	77
1. 규제개혁 실적과 성과 .....	78
2. 제1·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 추진현황 .....	83
3. 규제기요틴 조치현황 .....	84
4. 규제신문고 접수 및 조치현황 .....	85
5. ‘비정상외 정상화 과제’의 차질없는 개선 .....	86
V. 금융위원회 일반 현황 .....	89
[첨부1] 브랜드과제·국정과제 추진현황 점검 .....	96
[첨부2] 2014년 업무계획 추진현황 점검 .....	100

# I. 지난 2년간 금융정책 평가

◆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토대로 창조금융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금융시스템 안정과 신뢰회복에 주력

- ① (창조금융 인프라 구축)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13.11월), 금융규제 개혁방안('14.7월) 등을 바탕으로 기술금융 등 실물 지원 기능 강화, 독자적 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구축
- ② (금융혁신 실천) 보수적인 금융문화 혁신을 위한 은행 혁신성 평가, 제재 및 검사관행 개선, 행정지도 개선 등 추진
- ③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국민행복기금 출범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포용과 개인정보·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구축
- ④ (금융시스템 안정) 가계부채 구조개선, 기업구조조정 추진, 자본시장조사단 신설 등 금융안정과 금융질서 기반 조성

## 1. 창조금융 인프라 구축

◆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기반으로 금융규제 개혁, 기술금융 인프라 구축 등 창조금융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

□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13.11월)」, 「금융규제 개혁방안(‘14.7월)」을 통해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경쟁과 혁신 기반 마련

○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향후 10%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금융산업 발전의 중장기 로드맵 '금융비전' 제시

○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통해 법령·숨은 규제를 전면 정비\* 하고 상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규제개혁의 체감도 제고

\* 약 3,100건의 규제를 전수 조사하고 1,700건을 검토→ 약 700건 규제를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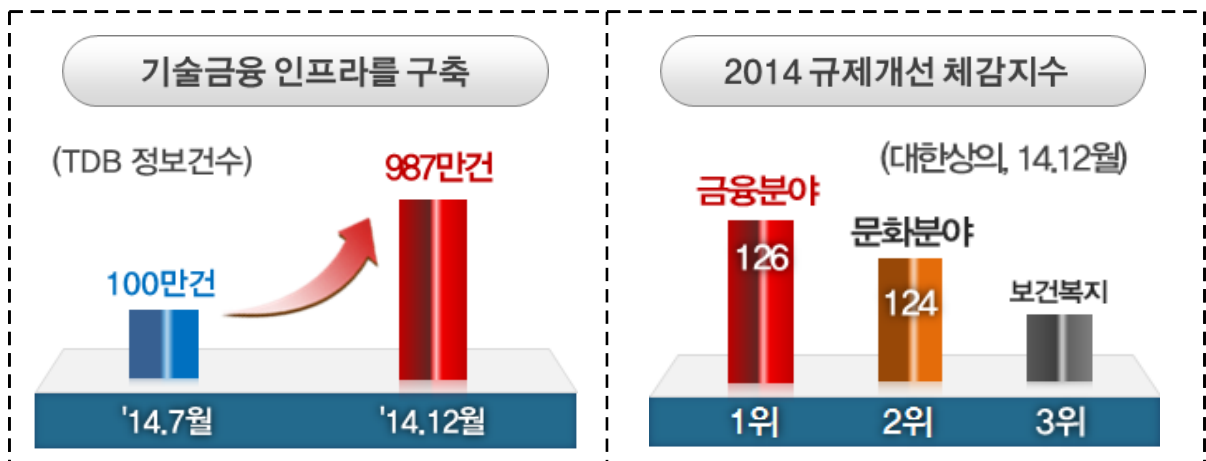
□ TDB\*, TCB 등 기술금융의 토대를 마련하고 기술금융을 본격화

\* '14년말 255개 민.관 협약기관에서 987만건의 기술정보를 수집하여 23개 기관에 제공

○ 기술금융 도입(‘14.7월) 반년만에 8.9조원(14,413건)을 우수 기술 기업에 공급했으며 금리부담도 기존대비 0.4%p 경감

○ 기술금융박람회\*, 기술금융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현장 중심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포상 실시

\* '2014 창조경제 박람회(11.27~11.30, 코엑스)에 기술금융 특별전시관을 설치·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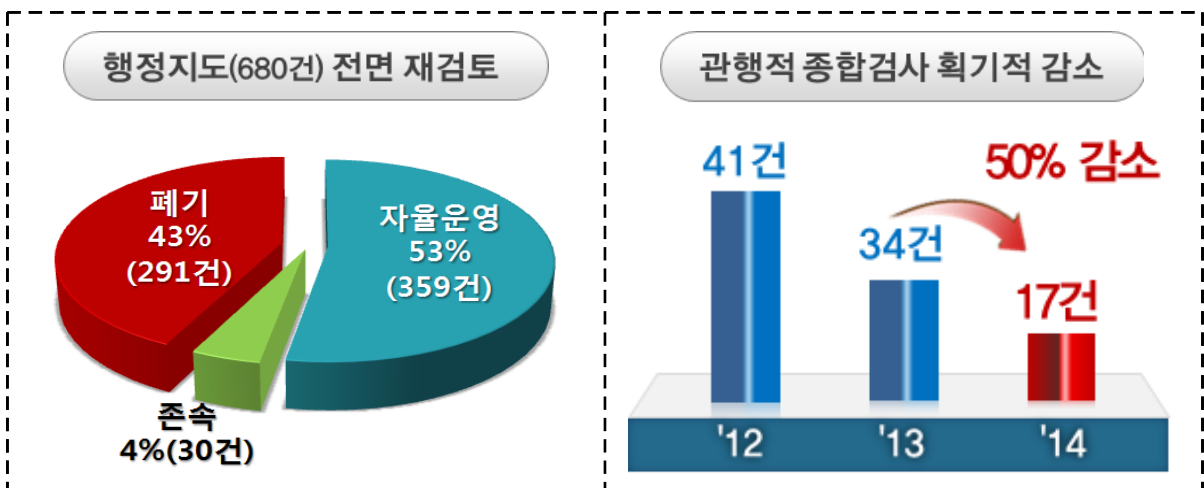


- 불합리한 연대보증 관행을 폐지하고 은행권의 꺾기 관행 근절
  - 제2금융권 연대보증도 전면 폐지하여 연대보증의 폐해를 방지하고 패자부활의 기회도 제공
  - 「은행의 금융상품 강요행위 관행 근절방안(‘13.10월)」을 통해 은행권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꺾기 관행을 근절
  
- 정책금융을 마중물로 하여 창의와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진취적 모험자본을 육성하고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본시장을 조성
  - 기업성장 단계별 성장사다리펀드 2.6조원 조성, 중소·벤처 전용 코넥스 개설(79개사 상장) 등 모험자본의 공급확대
  - 코스닥의 독자적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상장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여 코스닥 신규 상장건수 증가(’12년 21건→’13년 37건→’14년 70건)
  - 금투업 인가단위 간소화·절차 개선을 통해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시장 자율 M&A 유도 등 증권업 구조조정을 적극 독려
  
-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14.7월·9월)」을 마련·추진하여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발전에 기여
  -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14.5월)하고 사전인증 없이 ID·PW만으로 결제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14.12월)
  - 결제대행업체(PG)에 카드정보 저장방식 서비스를 허용(’14.8월)하고, Active-X가 없는 결제환경 구축을 추진(’15.3월 완료예정)
  
- 정책금융기관들의 시장마찰 및 역할 중복을 해소하고 변화된 금융환경에 부합하는 「정책금융 역할재정립 방안\*(’13.8월)」 추진
  - \* 산은-정금공 통합(’14.12), 중장기수출금융·해외프로젝트 지원역량 확대 등

## 2. 금융혁신 실천

◇ 창조금융 성과의 현장확산을 위한 「**창조금융 실천계획**(’14.8월)」을 마련하여 보수적 금융문화의 혁신을 위해 노력

- **넓은 금융관행을 타파**하고 금융현장에서 금융혁신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창조금융 실천계획**(’14.8월)」 추진
  - 창조금융의 성과체감을 위해 「**기술금융 현장 확산**», 「**모험자본 시장 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 등 3대 과제를 추진
- 민간전문가 중심의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융혁신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14.9월 이후 5차례 회의 개최)
  - 담보·보증에 의존하는 은행권의 자금중개 행태를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해 ‘**은행 혁신성 평가**’를 도입(’14.10월)·시행(’15.1월)
  - 직원에 대한 감독당국의 직접 제재를 원칙 폐지(’14.11월)하고 위규·절차상 하자 없는 부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근절
  -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종합검사를 절반 이상으로 축소하고 부실여신 검사는 회사에 위임하는 등 **사전예방식 감독**을 정착
  - 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석 경로를 일원화하고 행정지도(680건) 전면 재검토를 통해 적극적·투명한 금융행정 구현





### 3.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정보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기반 확립

#### □ 서민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자활 지원

- ‘국민행복기금’ 출범(‘13.3월)·운영을 통해 자활의지를 가진 금융채무 장기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과다채무부담 완화
  - \* 국민행복기금 규모 및 지원 내역(‘14.12월 기준) : (채무조정) 34.1만명  
약정체결, (연체채무 매입·이관) 280.7만명, (전환대출) 5.9만명(6,760억원)
-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조건을 통일하고 복지·근로 등 맞춤형 One-Stop 서비스 연계지원(취업성공패키지 1,552건 연계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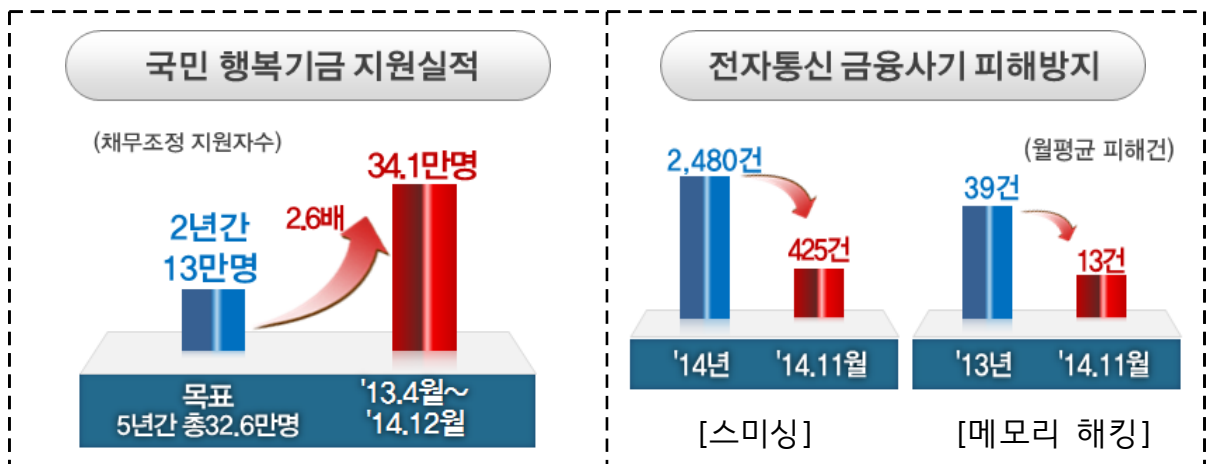
#### □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14.3월)」을 마련하여 정보유출에 따른 국민 불안·불편을 해소하고 정보유출 재발을 근본적으로 차단

- 정보처리 수단계별 보호 강화, 정보보호 요청권 신설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및 불법정보 수요 차단조치 등을 마련\*
  - \* 비대면영업 가이드라인(4월),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기준(5월), 대출모집인 내부통제방안(8월), 연락중지 청구(Do not call) 시스템(9월) 등
- 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도입, 과태료·형벌 등 제재 상향으로 정보유출 억제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구제 강화  
(신용정보법 국회 정무위 통과(‘15.1.12일), 법사위 계류 중)

#### □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13.12월, ‘14.8·12월)」을 통해 금융회사의 피해예방노력을 강화하여 소비자피해 방지에 기여

- 피싱, 스미싱, 메모리해킹 등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노력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 대폭 축소\*
  - \* 월평균 피해(건) : 스미싱(‘13) 2,480 →(‘14.11) 425 / 메모리해킹 : (‘13) 39 →(‘14.11) 13
-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100만원 이상 이체시 추가본인확인)를 모든 고객에게 전면시행하고 신입금계좌지정제(‘안심통장서비스’) 도입

- **대부업자의 관리·감독 강화 및 대부업 이용자 보호 강화를 통해 대부업 시장의 건전한 발전 도모**
  -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39%→34.9%)하고 중개수수료 상한(5%) 설정**
  - **대형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강화(시도지사→금융위·금감원)하고 자본금 및 인·물적 설비를 갖추도록 등록요건 등을 정비 추진**
-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확립**
  -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신설(‘13.8월)하여 총 33건의 금융권 불합리한 관행 등을 집중 발굴·개선**
  - **금융회사內 소비자보호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을 마련(‘14.12월)하여 정책방향 및 세부과제 제시**
- **맞춤형 금융소비자교육 기반 마련, 공적 금융상담 활성화, 100세 시대 노후준비 지원 등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도모**
  -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13.9월)」을 마련하여 금융교육 추진 체계 정비, 교육프로그램 체계화, 맞춤형 교육 등을 추진**
  -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등 공적 금융상담 채널을 확충하여 금융취약계층의 채무관리 등 종합적 상담 추진**
  - **사적연금 활성화, 新보험상품 출시 등으로 100세 시대에 따른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지원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보장**



## 4. 금융시스템 안정

◆ 금융시장의 잠재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위기관리시스템을 확립하여 안전한 금융투자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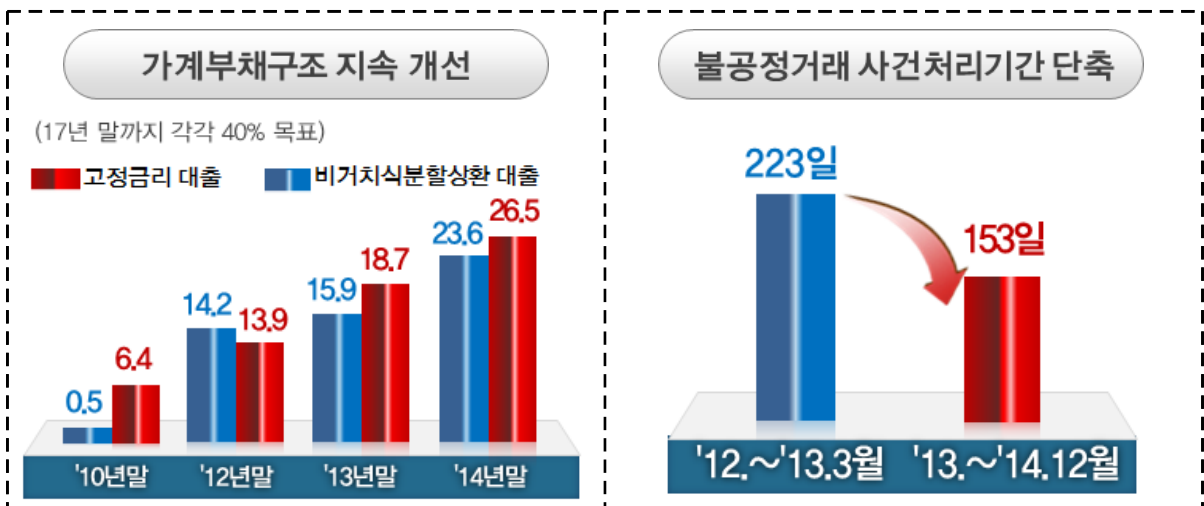
- 가계부채 연착륙 및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응 강화('14.2월)
  - 가계소득을 고려하여 부채의 총량을 적정 관리\*하는 한편,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유도
    -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를 핵심지표로 설정('17년말까지 5%p 인하)
    - \*\* 고정금리대출 및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을 '17년말까지 각각 40%까지 확대
  - 금융권 자율 프리워크아웃을 지속(20.9만건, 18.7조원)하고 바꿔드림론 대상 확대\*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취약차주 부담 경감
    - \* 지원대상 고금리 대출 확대(20%→15%, '14.4월) 등으로 '14.1~11월중 총 2,591건 지원
- 기업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업부실 사전관리 개선
  - 주채무계열 편입대상 확대, 재무구조평가 방식 개선, 관리대상 계열(약정체결 우려 계열) 신설 등 기업부실 사전방지 강화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시화 방안을 마련하여 채권단 주도의 효율적 구조조정 추진 기반 조성
  - 「회사채 정상화방안('13.7월)」을 마련하여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14.12월 2,172개사 3.8조원)
-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투자여건 확립
  - '자본시장조사단'을 신설('13.9월)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리기한을 단축(평균 223일 → 153일)하는 등 금융시장 공정성 제고
  - 특정금전신탁·파생상품 제도를 개선하여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규제차익 추구행위를 차단하여 시장 안정성 제고
  - 금융실명법을 개정하여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악용하는 행위, 금융회사 임직원의 알선·중개 금지

□ 글로벌 기준에 맞게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사전에 제고

- (은행·은행지주) 바젤Ⅲ 자본규제 적용('15년)에 맞춰 조건부 자본증권 도입 등 충분한 자기자본 적립을 선제적 유도
- (보험) 연결 RBC제도 등을 도입하여 재무건전성 제도를 선진화
- (증권) NCR제도 개선, 레버리지제도 도입 등 건전성 관리
- (저축은행\*·상호금융\*\*)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마무리 하였으며, 상호금융의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 \* '11년 이후 총 31개의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단행
  - \*\* 490개 중점관리조합을 선정하여 검사하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부정대출을 적발하여 조합원 보호조치를 조기 시행

□ 금융회사의 선제적 위험관리와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지배구조 선진화 추진

- 준법감시인 지위 권한 제고, CEO참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발표('14.8월)
- 지배구조 본연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13.6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14.12월)



**참 고** 2013~2014년 주요 금융정책 ([www.fsc.go.kr](http://www.fsc.go.kr) 참조)

	창조경제 인프라 구축	금융혁신 실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시스템 안정
'13. 上	제2금융권 연대보증폐지(4월)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 (5월)	국민행복기금 추진(3월)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강화(1월)
	은행, 보증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확대(5월)		금융교육 종합포탈 개통(6월)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6월)
	성장사다리펀드 활용방안(5월)			
'13. 下	정책금융역할 재정립(8월)	과태료,과징금 부과체계 합리화(9월)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9월)	회사채시장 정상화(7월)
	클라우드펀딩 도입 추진(9월)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12월)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9월)	금융전산 보안강화(7월)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12월)	증권사 M&A촉진(12월)	신·변종 전자금융사기 피해방지대책(12월)	은행·은행지주 비젤Ⅲ자본규제(8월)
			100세 시대 금융역할 강화(12월)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9월)
			서민금융지원 기준 통일(12월)	기업부실 사전방지(11월)
				동양 유사사례 재발방지(11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11월)		
'14. 上	공동검사 개선(1월)	소득공제장기펀드 ·하이일드펀드 출시계획(1월)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대책(3월)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2월)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1월)	온라인채널의 변액보험 판매 (4월)		증권사 NCR 제도개선(4월)
	기업상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4월)			
'14. 下	금융규제 개혁방안(7월)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8월)			
	전자상거래결제 간편화·활성화(7월)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7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7월)	보험사기 근절(7월)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8월)
	금융혁신위원회 운영(9월~) ①제재관행 개선 ②적극금융행정 ③은행 혁신성평가 ④은행 내부관행 개선 ⑤행정지도 전면 재검토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12월)	지배구조 모범규준 (12월)
	IT·금융 융합협업체(11월)	자산운용사 NCR 제도 개선(11월)		금융실명제 개선(11월)
			상호금융 가계부채 대응방향(12월)	

**참 고** 2014년 규제개혁과 금융혁신을 위한 현장방문

- (상반기) 현장 중심의 법령·숨은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 12차례 ‘금융현장 규제찾기’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약 150건의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심의 TF\*’ 등을 통해 현장 규제 발굴
    - \* 22개 금융유관기관별로 외부전문가(피규제자 포함)가 과반수 참여하는 TF 운영(전체 155명 중 외부전문가 102명)
  - 3,100여건의 규제를 목록화하고 1,700여건을 발굴·검토하여 700여건의 규제 개선 추진

< 상반기 현장방문 주요실적 >

시기	내용	횟수
4월	①창업·벤처기업, ②장애인·학부모, ③은행 등 준법감시인	3회
5월	①국내 외국계 금융사 ②금발심위원·금융권 연구기관장, ③금융투자업, ④보험업법 ⑤부동산금융, ⑥여전·저축은행·신협, ⑦금융사 해외진출, ⑧중소·영세·수출입기업, ⑨PEF·헤지펀드·프라임브로커	9회

- (하반기) 창조금융의 성과를 빠르게, 현장중심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점검과 실천을 추진
  - 금융혁신의 실천을 위해 금융위원장이 직접 기술금융, 모험자본, 규제개혁 등 주요 금융현장을 8월말부터 19차례 방문
  - 현장에서 제안된 건의사항(31건) 중 대부분(29건)을 수용 또는 긍정검토하고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정상추진 19, 완료 2, 검토 8)

< 하반기 현장방문 주요실적 >

시기	내용	횟수
8말-9월	기술금융, 서민금융 현장속으로, 모험자본 현장을 가다	3회
10월	IT 금융강국 선도에 힘을 모으다. 안전현장 점검, 저축의날 행사 등	3회
11월	관계형금융 현장속으로, 기술금융 박람회 등	5회
12월	창조경제 유망기업 자본시장 스타벅, 기술금융현장, 판테크 간담회 등	8회

## 참 고

## 금융소비자기획단의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주요 실적

과제명	발표일자
① 보험회사 자문의 선정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13.11.20
② 고령층 등 금융약자 보호 강화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	'13.11.20
③ 대출 가산금리 변동시 변동사유 안내 강화	'13.11.29
④ 은행의 일률적인 근저당권설정비율(120%) 관행 개선	'13.11.29
⑤ 보증인도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기한이익 상실 사전 통지	'13.11.29
⑥ 신용카드 포인트로 연회비 결제	'13.11.29
⑦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명칭을 "단기 카드대출"로 변경	'13.11.29
⑧ 주소지 일괄변경 서비스 도입 확대	'13.11.29
⑨ 보험금 가지급금 청구권 강화	'14. 1. 6
⑩ 소비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일 변경권 도입	'14. 1. 6
⑪ 은행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수수료를 사전 안내	'14. 1. 6
⑫ 자동차 사고시 렌트비 지급 기준 개선	'14. 2. 7
⑬ 금융상품별 예금자보호 정보 제공 강화	'14. 3.13
⑭ 저축은행, 신협이 대출 조건변경시 채무관계인 동의 의무화	'14. 3.13
⑮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증명서 등 발급	'14. 4.10
⑯ 저축은행 대출원리금 미납시 연체사실 통지 의무화	'14. 4.10
⑰ 소비자의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활성화	'14. 4.18
⑱ 의무보호예수 주식 반환에 대한 對주주 사전통지체계 구축	'14. 4.18
⑲ 은행 전화 안내를 통한 가계 신용대출 연장	'14. 5. 1
⑳ 저축은행 신용공여한도 사전 안내 실시	'14. 5. 1
㉑ 은행 마이너스통장대출시 이자납입 가능일 확대	'14. 6. 2
㉒ 인터넷뱅킹을 통한 개인 발행 자기앞수표 정보조회 등 서비스 제공	'14. 6. 2
㉓ 은행 영업시간외 ATM 입·출금서비스 장애발생시 처리개선	'14. 7. 2
㉔ 저축은행 텔레뱅킹으로 처리 가능한 금융서비스 확대 추진	'14. 7. 2
㉕ 저축은행의 고객 사망에 따른 예적금 해지시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관행개선	'14. 7.18
㉖ 증권투자시 신용거래에 대한 계좌설정보증금 폐지	'14. 8. 5
㉗ 저축은행의 연체 이후 이자 부분 납입시 이자납입일 연기(변경) 가능	'14. 8. 5
㉘ 미수동결계좌 최초 발생 증권사에서 SMS의무통보	'14. 9.18
㉙ 은행 당좌개설보증금을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	'14. 9.18
㉚ 신기보 보증부 대출시 만기책정 방법 개선	'14.12. 5
㉛ 예보 파산재단 관련 민원처리시스템 개선	'14.12. 5
㉜ 은행 제신고서상 소비자 책임 표현 개선	'14.12.18
㉝ 변액보험 증액시 사업비 공제 안내 강화	'14.12.18

## Ⅱ. 2015년 금융정책 여건 및 방향

1. 2015년 금융정책 여건
2. 2015년 금융정책 방향



## 1. 2015년 금융정책 여건

- ◆ 전반적인 국내외 실물부분 회복세가 기대되는 가운데, 대내외 여건변화로 국내 경제·금융부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기대감 속에, 美 금리인상, 급격한 유가변동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 대내적으로 가계·기업의 구조적 취약성 개선이 지연되고 금융산업 경영여건에 대한 하방위험이 지속될 전망
- ⇒ 금융시장 변동성, 민간부문 부채 수준, 금융산업 수익성 등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면밀한 점검·대응 추진

### 가 대외 리스크요인 및 전망

- '15년 세계경제는 당초 기대보다 경기 회복의 속도가 지연되고 있으나, 미국을 중심으로 점진적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
  - \* 세계 성장률 전망(IMF WEO) : ('13년) 3.3% → ('14년) 3.3% → ('15년) 3.5%
- '14년에는 유로존 디플레 우려, 日 소비세 인상 여파, 中 구조조정 지속 등 하방 리스크가 부각되며 예상보다 회복세가 둔화
  - \* '14년중 세계 성장률 전망 변화(IMF WEO) : (4월) 3.6% → (10월) 3.3%
- '15년에는 美의 견조한 성장세와 함께 ECB·BOJ 등 주요국의 추가적 정책대응 등으로 꾸준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
-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개선 기대에도 지역별로 불균형적 회복세가 예상되는 등 국가별 경기하방 리스크는 상존
  - 유로존은 확장적 통화정책 노력에도 獨·佛 등 주요국 수출부진 등이 겹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될 가능성
    -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 : (9월) 0.3% → (10월) 0.4% → (11월) 0.3% → (12월) △0.2%

- 중국은 부동산 위축 및 글로벌 수요 축소에 따른 수출 감소, 구조개혁 지속 등으로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
  - \* '15년 중국경제 성장률 전망(전년비) : (OECD) 7.1%, (IMF) 7.1%
- 디플레 타개를 위한 日중앙은행의 적극적 양적완화 및 연기금 등의 투자확대로 엔화약세 흐름이 가속화·장기화될 가능성
  - \* BOJ 추가 양적완화('14.10월) : 본원통화(80조엔) 및 국채매입(80조엔) 확대
  - \* GPIF 자산운용계획변경('14.10월) : 국내주식(12→25%), 해외투자(23→40%) 확대
- 금융부문에서는 美 금리인상, EU·日의 공격적 통화정책, 급격한 유가변동 등이 글로벌 변동성 확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내년 상반기 美 금리인상 가시화시 달러강세 가속화 및 일부 취약한 신흥국으로부터 자본유출 등 시장불안 촉발 가능성
    - \* '13.5월 Fed의 양적완화 축소 시사 이후 주요국 주가변동폭('13.5.22~6.25) : (선진국 MSCI)△7.4%, (신흥국 MSCI)△15.7%, (韓)△10.7%
  - 또한, 최근 급격한 유가하락은 오일머니 위축, 일부 산유국 금융불안 등을 유발하여 글로벌 자금흐름에 불확실성 가중
    - \* 주요 산유국 해외투자 규모(억불) : ('06)5,000 → ('12)2,480 → ('13)600 → ('14)△76
    - \* 러시아 금융지표('15.1.21일, '13년말대비) : (주가)△45.79%, (환율)+100.40%, (CDS)+415bp
-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경제의 안정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지속되고 있어, 위기 발생시 여타 취약 신흥국과 차별화될 전망
  - \* CDS프리미엄('15.1.21일, '13년말대비 bp) : 韓(2↓), 日(22↑), 中(17↑), 브라질(14↑)
- 다만, 美·유로존·日 등 주요국의 엇갈린 통화정책 등 대외 경제·금융여건의 하방 위험은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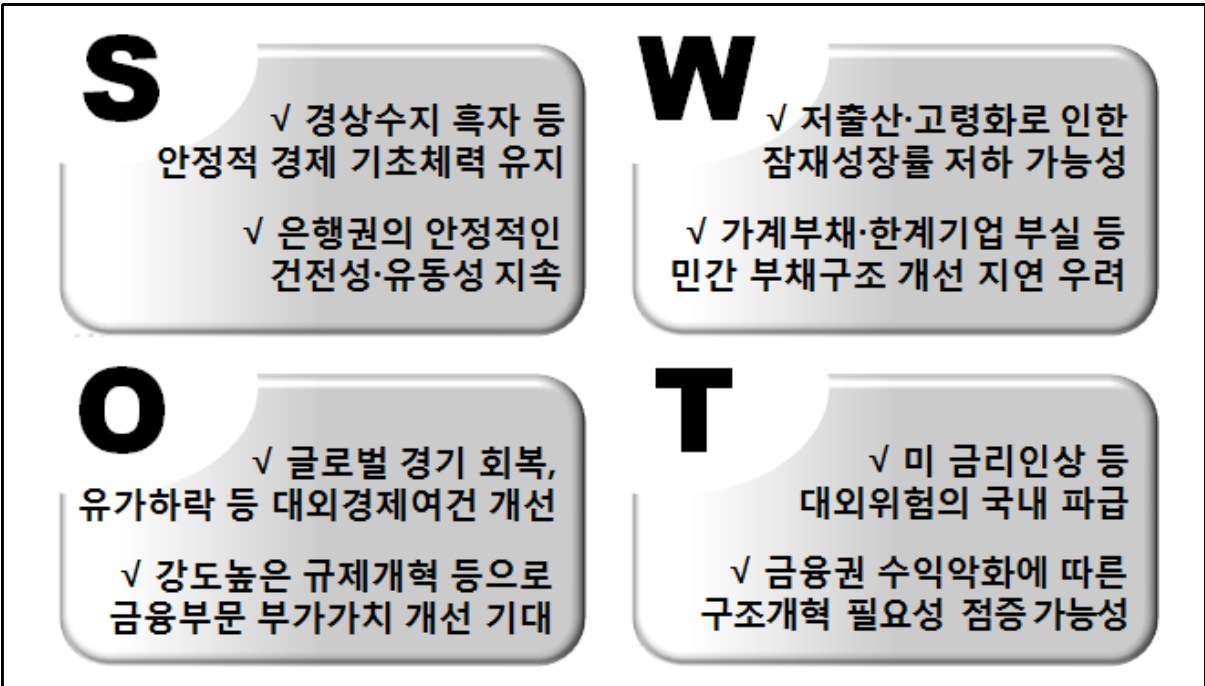
➔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대외 충격시 발생가능한 위기 파급경로에 대한 점검 지속

## 나 대내 리스크요인 및 전망

- **금융산업**은 저축은행 구조조정('11년) 이후 건전성 측면의 큰 문제는 없으나,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에 직면**
  - **(은행)** 저금리 기조로 이자마진 감소, 부실기업 대손 비용 증가 등으로 **수익 기반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추세**
    - \* NIM(명목순이자마진) 추이(조원): ('11)2.30 → ('12)2.10 → ('13)1.87 → ('14.3Q)1.81
  - **(보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역마진 가능성 등 **경영효율화 필요성에 직면**
    - \* '14년중 점포수(7,300개, 9말기준): 353개 감소(△4.6%), 임직원수: 2,470명 감소(△3.9%)
  - **(금융투자)** 시장 전반의 활력이 위축되는 가운데, 수수료 중심의 취약한 수익구조 등으로 **구조조정 압력 가중**
    - \* 자산운용사 ROA(총자산수익률) 추이: ('10)11.4% → ('12)8.5% → ('14.3Q)8.0%
  -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성장둔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기관의 경영여건 악화 우려**
- **금융시장**은 수년간 내부요인에 기인한 충격에 특별히 노출되지 않은 가운데, **민간부문 부채**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현재 즉각적인 **가계부채** 관련 위기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관리** 노력을 지속할 필요
  - 기업부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하면서 기업자금시장 양극화 등이 심화될 우려
    - \* 이자보상비율 1미만 기업 비중: ('09) 30.5% → ('11) 33.9% → ('13) 38.8%

➔ **내수활성화를 지속 뒷받침하는 동시에 규제합리화 등 금융 부문 구조개혁 노력을 병행 추진**

**참 고** 우리나라 경제·금융여건 SWOT 분석



- 대내외여건 측면에서 강점(Strength) 및 약점(Weakness) 요인
  - (강점) 경상수지 흑자, 충분한 외환보유고 등 경제 기초체력이 튼튼한 가운데, 은행권 건전성·유동성이 안정적 수준을 지속 유지
  - (약점)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가계·기업부문 부채구조 개선 지연 우려
- 대내외여건 측면에서 기회(Opportunity) 및 위협(Threat) 요인
  - (기회) 글로벌 경기의 완만한 회복 기대, 유가하락, 달러대비 원화 약세 등으로 대외여건 개선 기대
    - 대내외 구조개혁 필요성에 대응한 강도 높은 규제 합리화 조치로 금융산업의 효율성·생산성이 제고될 가능성
  - (위협) 美 금리 인상, EU·日 경기 둔화 우려, 급격한 유가 변화 등 대외 위험요인이 국내 금융시장으로 파급·전이될 우려
    - 금융권 수익악화에 따른 구조개혁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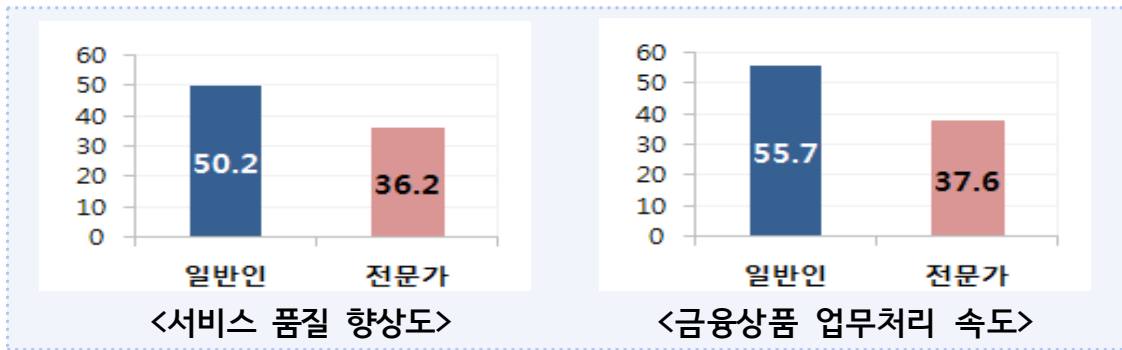
**참 고** 2014년 주요정책 對국민 서베이 결과

◆ '15년도 정책방향 설정 등을 위해 일반국민(1,011명) 및 전문가집단(179명)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 (갤럽, '14.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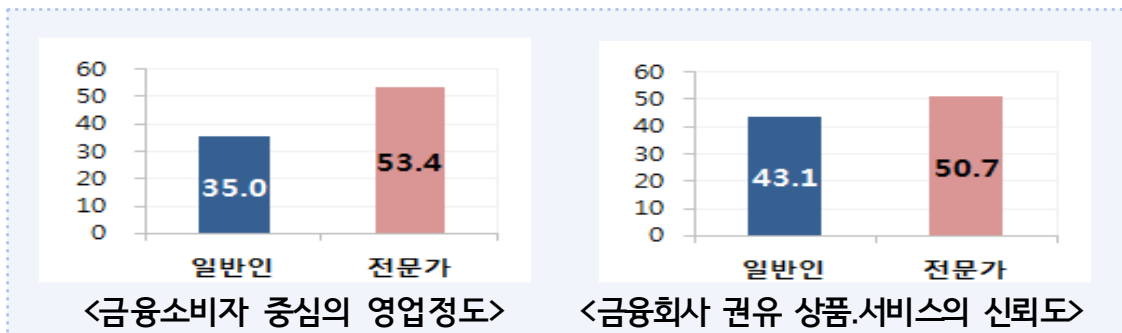
1. 전반적인 금융부문에 대한 인식 (일반인·전문가 대상)

- (개요) 금융부문의 경쟁력 및 신뢰성, 안전성에 대한 인식수준 확인을 위해 일반인과 전문가 양측을 비교하여 만족도 조사
- (조사결과) 전문가는 일반인보다 금융부문 경쟁력 수준을 낮게 평가하였고 일반국민은 전문가보다 금융서비스 신뢰도 및 정부의 대처능력에 대해 여전히 낮게 평가

① (경쟁력) 일반인은 전문가에 비해 금융서비스의 품질 향상도, 업무처리 속도 등 금융상품·서비스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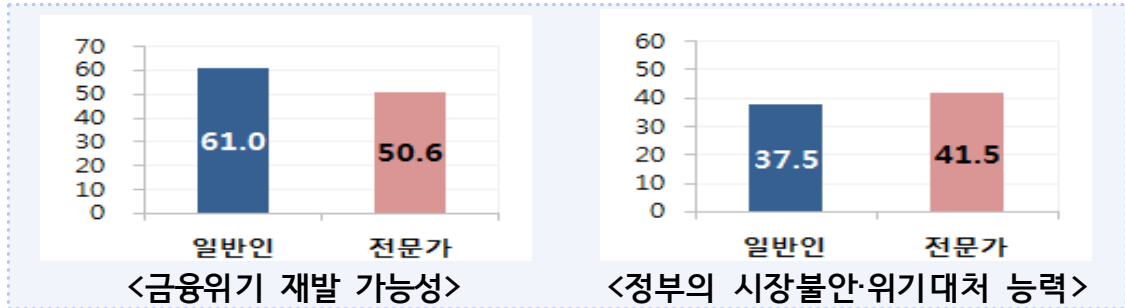


② (신뢰도) 소비자 중심 영업, 금융회사 권유상품의 신뢰도 등 소비자보호 및 신뢰도 측면은 일반인보다 전문가가 높게 평가



③ (안전성) 일반인 및 전문가 모두 금융위기 재발가능성 등 시장 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가운데,

- 특히, 일반인이 전문가 대비 위기발생에 대한 불안 및 정부의 대처능력에 대한 우려가 컸음



- (시사점) 금융부문의 신뢰도, 안정성, 서비스품질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 시급
  - 정부와 업계 모두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을 경주할 필요
  - 금융안정 및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노력 강화 필요

## 2. '14년도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 (전문가 대상)

- (개요) '14년에 실시한 16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전문가 대상 심층 평가(서베이)를 실시
- (평가결과) 16개 과제의 종합점수는 65.9점(100점 만점)으로 대부분 과제가 60점과 70점 사이 ⇒ 평가 점수는 중·상 수준
  - 정부 노력(72.7점)에 비해 실질적 성과(60.2점), 체감만족도(61.8점)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
  - 금융규제개혁과 금융문화 개선은 인지도(각각 77.9, 81.5점) 및 정책노력(75.8, 75.3점)에 대한 평가는 좋았으나, 실질적 성과(57.8, 55.6점) 및 체감만족도(62.4, 59.9점) 등에서 낮게 평가

- 항목별로 **개인정보 보호**,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등은 **높은** 평가를 받는데 반해, **유망기업 상장 활성화**, **금융과 IT 융합** 등에 대한 평가는 다소 저조

< 주요 정책별 만족도 평가결과 >

과제명	인지도	의견수렴	정부노력	변화대응	실질적성과	체감만족도
<b>전체</b>	78.2	63.8	72.7	63.5	60.2	61.8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강화	92.8	65.5	78.8	66.2	64.9	65.1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74.5	70.5	74.7	67.9	65.4	66.7
성장사다리펀드 조성·집행 활성화	77.8	66.7	74.7	63.0	64.8	68.5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선진화	89.0	66.7	78.7	64.0	58.7	61.3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84.3	69.8	77.2	67.3	61.7	58.0
공시규제 합리화	68.5	64.8	69.1	65.4	66.7	67.9
금융 규제개혁	77.9	59.8	75.8	62.4	57.8	62.4
금융소비자 보호	81.8	64.1	70.9	62.8	57.1	60.2
글로벌 수준의 카드 간편결제 활성화	72.4	63.5	70.9	63.9	59.6	63.0
보수적 금융문화 개선	81.5	61.1	75.3	63.0	55.6	59.9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78.0	63.8	69.7	62.3	60.1	60.7
금융과 IT의 융합	75.0	64.6	69.7	62.6	58.8	59.5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 및 내실화	77.0	60.0	72.0	65.3	57.3	56.0
보험대출 금리체계 합리화 및 비교공시 개선	66.7	62.8	70.1	62.5	58.7	59.7
시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자발적 노후준비 지원	73.0	59.9	70.1	61.2	56.1	58.2
유망기업 상장 활성화	75.0	55.1	67.9	56.4	57.1	56.4

□ (시사점) 금융개혁 과제에 대한 체감도 높고 가시적 성과도출을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 필요**

- 특히, 보수적 금융문화는 **한번의 대책만으로 부족하며 실제 행태 변화가 나올 때까지 지속 추진**
- 또한, 금융규제개혁도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지속적으로 추진** 하여 **금융현장의 체감도를 제고**
- 금융이 IT와 융합하는 **핀테크(Fin-Tech)**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조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

3. '15년도 추진과제 (전문가 대상 심층 서베이)

□ 주요 위험요인

- (대외) 중국 경착륙 → 엔저지속 → 미국 금리인상 順으로 응답
- (대내) 가계부채 → 디플레이션 → 한계기업 부실확대 順 응답

□ 중점 추진과제

-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안정 → 금융규제 추가 개혁 → 금융·IT 융합 順으로 응답
- 금융업권 정책고객(금융사·협회 등)은 금융규제 추가 개혁을, 비금융업권 정책고객은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금융·IT 융합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

순위	중점 추진과제	응답률(%)	금융업권	비금융업권
1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등 금융안정	46.9	44.2	49.5
2	금융규제 추가 개혁	41.3	59.3	24.7
3	금융·IT 융합	25.7	23.3	28.0
4	금융부문 신뢰 회복	25.1	23.3	26.9
5	금융소비자 보호	18.4	10.5	25.8

□ 주요 분야별 세부 정책제언

- ① (경쟁력 강화) 금융감독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 및 금융회사 스스로가 변화할 유인을 제고할 필요
- ② (신뢰 확보) 금융감독의 일관성 확보 및 금융윤리 의식제고, 금융회사내 보수적 문화·관행 개선이 시급
- ③ (가계부채 관리) 채무상환 능력을 감안한 대출관행 정립, 가계 소득 증대 대책 마련이 중요
- ④ (소비자보호) 금융회사 윤리의식 제고를 통한 사고 근절 및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필요성을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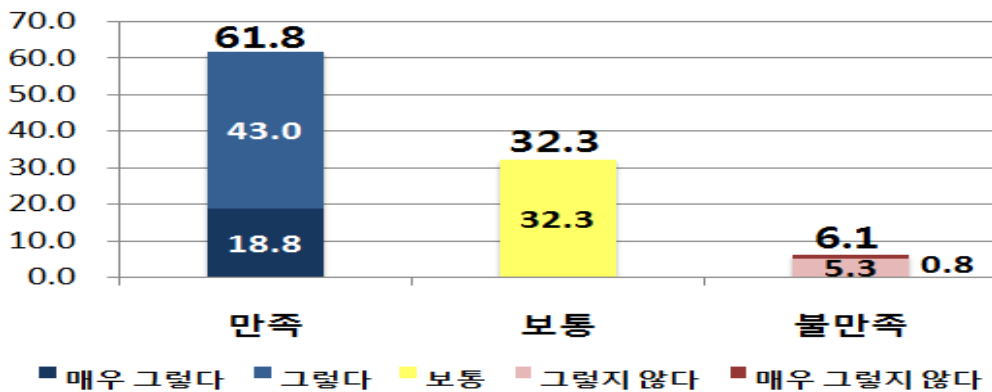


**참고** 2014년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 서베이 결과

◆ 기술금융 정책효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위해 중소기업 임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 (한국리서치, '14.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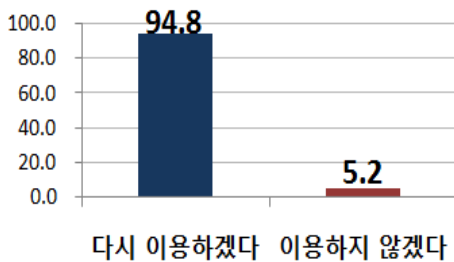
□ (정책만족도)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61.8%)이 기술금융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불만족한다는 응답(6.1%)을 크게 압도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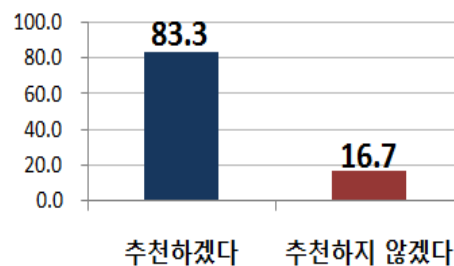


□ (지속가능성) 응답자 대부분이 기술금융을 다시 이용하길 희망하고 주위에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 지속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

**향후 이용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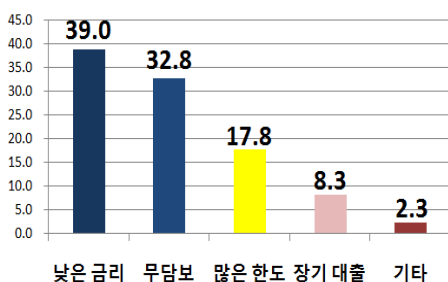


**주위 추천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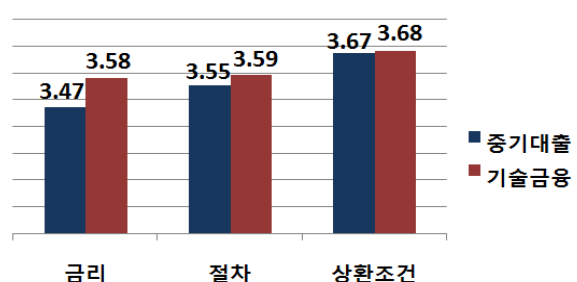


□ (정책효과) 금리 인하 및 담보부담 해소를 가장 기대하였으며 실제 중기대출 대비 기술금융 금리 및 절차에 대한 만족이 높음

**기대 사항**



**중기대출 대비 만족도 (5점 만점)**



## 2. 2015년 금융정책 방향

- ◇ 창조금융과 금융혁신을 위해 구축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전력
    - 금융혁신과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을 통해 금융권의 보수적 관행을 쇄신하고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역동적 금융생태계 정착
    -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금융산업 도약을 위한 금융신뢰를 확립
    - 가계부채 등 잠재리스크 점검과 관리강화 등 위기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경기회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
- ⇒ 분야별로 3대 핵심과제 및 9개 실천계획을 현장 중심, 부처 협업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

### 【 핵심과제 1. 창조금융 성과확산으로

창조경제를 선도하겠습니다. 】

- ①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IT와 금융융합 추진
- ②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등 자금중개기능 강화
- ③ 금융개혁 지속 추진으로 금융부문 혁신과 경쟁력 강화

### 【 핵심과제 2. 금융시장의 신뢰를 확립하여

금융산업을 새롭게 도약시키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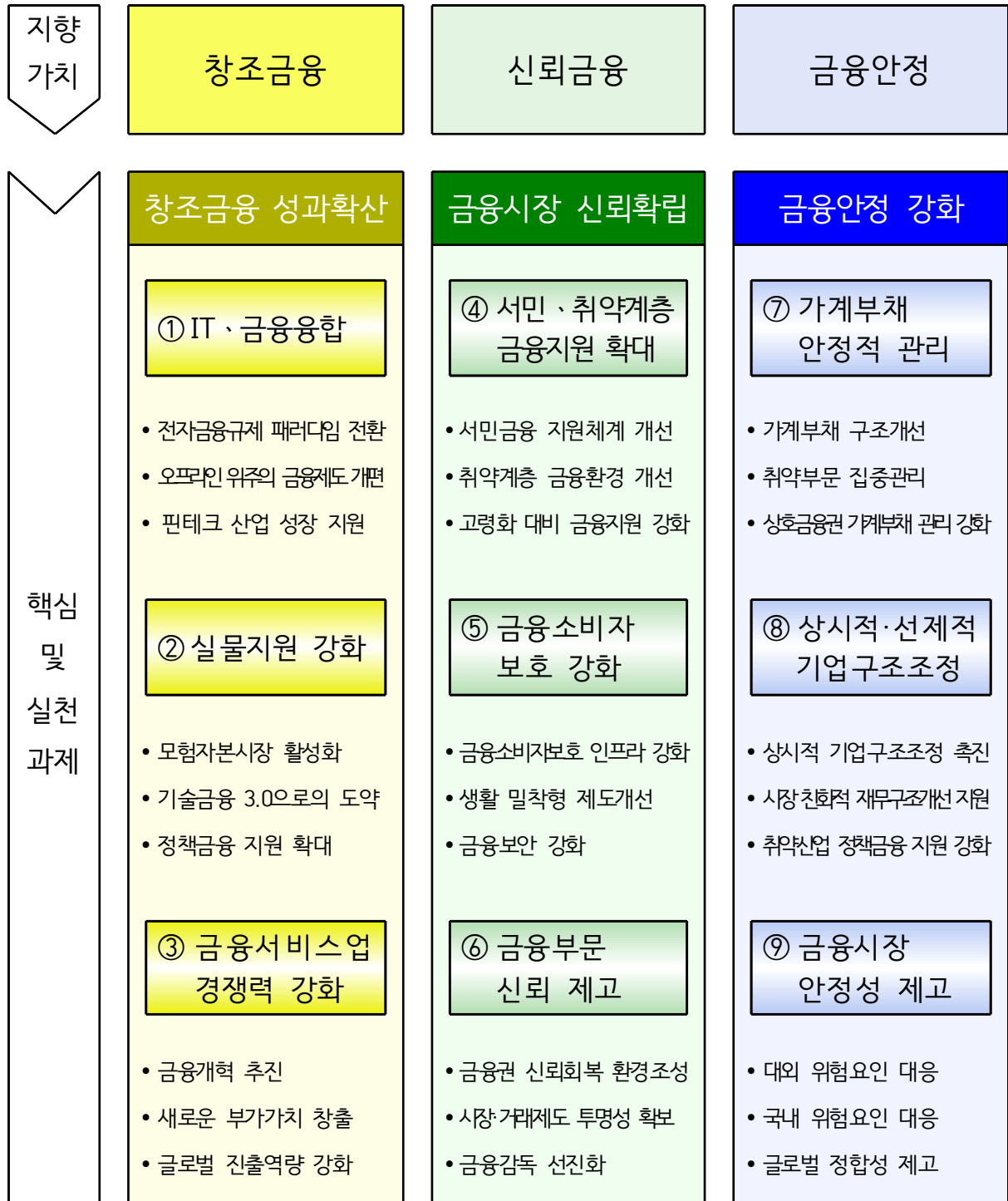
- ④ 취약계층 금융환경 개선 및 지원 확대
- ⑤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 등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 ⑥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권 윤리규범 정립 등 신뢰 제고

### 【 핵심과제 3. 금융안정을 확고히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 ⑦ 가계부채 모니터링 강화 및 안정적 관리
- ⑧ 상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 ⑨ 대내외 리스크요인 대응 등 금융안정성 제고

<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체계도 >



현장 중심 실천과 점검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업을 만들겠습니다.

**참 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체계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15년 업무계획	비전
<p>역동적인 혁신경제</p> <p>미래대비 투자</p> <p>창조경제 구현</p> <p>해외진출 촉진</p>	<p>[핵심과제1 : 창조금융 성과확산] 창조금융 성과확산으로 창조경제를 선도하겠습니다.</p> <p>①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IT.금융융합</p> <p>②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등 자금중개기능 강화</p> <p>③ 금융개혁으로 금융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p> <p>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p>	<p>창조경제를 선도하고</p> <p>경쟁력있는 금융업을 만들겠습니다.</p>
<p>기초가 튼튼한 경제</p> <p>사회안전망확충</p> <p>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p>	<p>[핵심과제2 : 금융시장 신뢰확립] 금융시장의 신뢰를 확립하여 금융산업을 새롭게 도약시키겠습니다.</p> <p>④ 취약계층 금융환경 개선 및 지원 확대</p> <p>⑤ 금융소비자 보호강화</p> <p>⑥ 금융부문의 신뢰제고</p>	
<p>내수.수출 균형경제</p> <p>투자여건 확충</p> <p>내수(소비) 기반 확대</p>	<p>[핵심과제3 : 금융안정 강화] 금융안정을 확고히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p> <p>⑦ 가계부채 모니터링 강화 및 안정적 관리</p> <p>⑧ 상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대응</p> <p>⑨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p>	

## Ⅲ. 2015년 금융정책 세부 실천계획

1. [핵심과제 1] 창조금융 성과확산으로  
창조경제를 선도하겠습니다.
2. [핵심과제 2] 금융시장의 신뢰를 확립하여  
금융산업을 새롭게 도약시키겠습니다.
3. [핵심과제 3] 금융안정을 확고히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1. 창조금융 성과확산

창조금융의 성과를 확산하여 창조경제를 선도하겠습니다.

### < 기본 방향 >

- ◆ 금융혁신과 금융규제개혁을 통해 금융권의 보수적 관행을 쇄신하고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역동적 금융생태계를 정착
- IT와 금융의 융합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 모험자본 육성, 기술금융 현장확산,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금융이 창조경제를 선제적으로 지원
- 혁신을 촉진하는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역동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 추진

#### ■ [실천계획①]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IT와 금융융합

- 가.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 전환
- 나.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 개편
- 다. 핀테크 산업 성장 지원

#### ■ [실천계획②] 실물지원을 위한 자금중개기능 강화

- 가.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 나. 기술금융 3.0으로의 도약
- 다. 정책금융을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지원 강화

#### ■ [실천계획③] 금융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 가.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
- 나. 금융환경 변화 대비 대응역량 강화
- 다.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실천계획①**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IT·금융융합**

**가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 전환**

◆ 과도한 사전심사, 세세한 보안규정, 책임부담 불명확성 등으로 금융사는 신규 서비스 개발, 자체적 보안능력 강화에 소극적

⇒ 사전적·전지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금융회사·IT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되, 사후적 책임은 강화

① (사전규제 최소화) 금융당국이 서비스 보안수준을 ‘사전적’으로 점검하던 기존 태도를 버리고 ‘사후적’ 관리 강화에 역량을 집중

-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사전 ‘보안성심의’ 제도를 전면 폐지하여 금융사 부담을 완화하고 적시성있는 서비스 출시 도모

< IT부문 신규사업 추진시 단계별 보안대책 의무 >

단 계	사업계획		사업추진	사업완료	운 영
대 책	자체 보안대책 수립 보안성 심의	<b>보안성 심의</b>		취약점 분석평가	정기적 취약점 분석평가 및 점검
수 행	금융회사	<b>금융위·금감원</b>		금융회사	금융회사

- ‘취약점 분석평가’ 내실화,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테마 검사 실시 등 사후적 검사 강화를 병행

- 전자금융거래용 보안·인증수단에 대한 사전 규제로 작용해왔던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

- 지나치게 세세한 금융보안 관련 시설·정보기술·정보처리시스템 보호 규제를 개선하고, 필요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② **(기술중립성 원칙 구현)** IT 신기술 도입을 저해하는 기술장벽 철폐

- 공인인증서 등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제하는 의무규정을 일괄 폐지하고 기술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선
- '14년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를 추진한 카드사·PG사에 이어, '15년에는 은행·증권사 등의 금융거래에서 ActiveX 제거

③ **(책임부담 명확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비금융회사의 금융 소비자에 대한 책임부담을 명확히 하여 핀테크사업 제휴 활성화에 기여

- 금융회사 등만을 금융서비스 책임자로 한정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다수기관 공동 서비스의 책임분담을 명확화
  - 사고책임 부담능력이 있는 비금융회사는 금융사고의 책임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전자금융업자의 금융소비자 책임 부담에 있어서도 금융사고 이행책임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책임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함
  - 현행 1~2억원에 불과한 전자금융사고 책임보험 가입금액을 사고발생건수, 지급거래 처리 규모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증액

④ **(규제 예측성 강화)** 소극적·방어적인 규제 적용이 아닌 적극적인 규제 해석 등을 통해 핀테크 사업자의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

- 환경변화에 따른 입법미비사항을 적극 보완하고 적극적 법 해석을 통하여 법규 적용의 예측가능성 확보
  - 전자금융분야 규제에 대한 유권해석 및 주요 민원답변 등을 담은 설명서 또는 FAQ를 제작·배포
- 현행 법률상 관련 규율의 범위가 불분명한 등 법적 불안전성이 있는 서비스·상품에 대해서는 '비조치의견서'의 활발한 활용 유도
- '14년 하반기 한시적으로 운영된 「IT·금융융합협의회」를 '15년중에도 운영하여 핀테크 관련 사업자·금융회사·당국간 소통 강화



## 나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 개편

◆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등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금융모델에 대한 제도의 포용성이 낮음

⇒ 오프라인 거래를 전제로 한 금융제도를 온·오프라인 융합 거래 및 온라인·모바일 거래 포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편

①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방안을 적극 연구·검토하고 기본방안 마련

- 실명확인 방법을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확대
- ‘은산분리 원칙’과의 조화방안, 자본금 요건이나 업무범위 조정 등 기존 은행과의 차등화 필요성 및 보완방안 강구

② (클라우드 펀딩 활성화) 클라우드 펀딩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노력과 함께 클라우드 펀딩 제도 안착 방안 마련

\* 현재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13.6.12 발의)이 국회 계류 중

- 하위법령 정비 및 중앙기록관리기관 지정,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 등록 등 클라우드 펀딩 제도 안착 조치를 신속히 완료
- 클라우드 펀딩 투자에 정책펀드 또는 민간 벤처캐피탈의 참여 유도

③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금융의 옴니(Omni) 채널 트렌드에 대응

- 펀드 슈퍼마켓(‘13.9월)에 이어 보험슈퍼마켓 도입
- IFA·IWA\*와 연계하여 온라인으로 펀드, 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활성화

\*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금융상품자문업

\*\* IWA(Individual Wealth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④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개인정보보호를 전제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금융산업 지원**

- 금융당국·금융권 공동으로 「금융권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에 대해 검토
  - \*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방통위, 14.12.23 발표)의 금융권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
- **비식별화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新금융상품 개발과 부가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
  -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통합 집중기관이 출범할 경우 동 기관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활성화를 추진
- 금융거래(결제·여신·자산운용 기록 등) 정보의 분석·활용 능력을 갖춘 금융권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 결제 정보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호 업종·지역 등 소비 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지속 추진
  - \* 카드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 旣개정('13.9월), 여신협회의 여신금융연구소('15.1월 신설)를 통해 빅데이터 관련 연구 강화

**⑤ (결제부문 낡은 규제정비) O2O\* 거래, 모바일 서비스 등 新 기술 활용을 제한하는 '오프라인 거래를 전제로 한 규제'를 정비**

- \* O2O 온.오프라인 연계서비스 (Online ↔ Offline)
  - 예) 배달앱으로 구매 → 오프라인 배송
  - 매장방문 → 사용자인식 → 쿠폰 제공 → 구매
- 카드번호 입력과 사전인증(SMS, ARS 등)을 거치지 않는 '간편 결제' 활성화 등 전자상거래 결제간편화를 차질없이 시행
- 실물카드(母카드) 없는 모바일 카드의 단독발급 허용(6월), 매체분리원칙 폐지(1월) 등 낡은 규제를 발굴.개선

## 다 핀테크 산업 성장 지원

◆ 핀테크 기업은 낮은 금융규제 환경, 높은 전자금융업 진입 장벽 등으로 금융·결제시장 진입 및 활동에 애로를 호소

⇒ 금융위, 금감원, 미래부 등 관계기관의 제도적·행정적·재무적 지원을 집중하여 핀테크 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① **(핀테크 지원체계 구축)** IT·금융 융합을 위한 선진국형 지원 체계를 구축

○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이 협력하여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관계부처 협조)

- 핀테크 서비스 단계별로 행정·법률 상담, 규제해설, 자금지원, 금융사 연계 등 핀테크 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도모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핀테크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원 효과 극대화

○ 보안·인증분야 핀테크 단위기술의 보안수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민간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

\* 금융보안원 등 민간기구가 보안·인증기술의 안전성 수준을 평가토록 하여 금융회사들의 검증 비용 감축, 핀테크 기업의 기술 신뢰성 획득을 도모

② **(핀테크 기업 자금조달 지원)** 벤처캐피탈,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도모

○ 벤처캐피탈의 핀테크 기업 투자제한 완화 추진(중기청 협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핀테크 기업은 금융업으로 분류되어 벤처투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

○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핀테크 기업 지원규모 확대

- 산은·기은의 대출·투자 등 2천억원, 신보·기보의 보증지원 등 다각적 형태로 '15년 중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적극 추진

③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전자금융업 등록요건 등 진입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핀테크 산업 활성화 촉진

- 해외사례에 비해 다소 높게 설정되어 있는 현행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자본금 규제를 중장기적으로 50% 수준 이상 큰 폭 완화
  - \* 현행 자본금 기준 : (선·직불) 20억원 (PG·결제대금예치) 10억원
-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및 금융시스템 혼란 우려가 비교적 적은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은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 단위 신설
  - \* 대폭 완화된 등록요건(자본금 최대 1억, 전산인력 확보 기준 하향 등)을 적용하되,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영업만을 허용
- 금융투자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겸영을 허용

④ **(전자지급수단 이용 활성화)** 전자지급수단 발행·이용한도를 확대하고 한도규율 방식을 전환하여 소비자 활용도 증대

- 기명식 지급수단은 현행 발행권면한도 규제를 1일 및 1월 이용한도 규제로 전환
- 직불수단은 비대면 수단의 경우에도 1일 이용한도를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직불업자의 규모,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

⑤ **(전자금융업종 규율 재설계)** 전자금융업의 종류 및 등록 요건을 전면 재정비하여 서비스 실질에 맞는 업종규율로 개선

- 유사 전자금융업종을 통·폐합하여 현행 7개로 구분되는 전자금융업종을 3~4개 업종으로 축소
- 전자금융업자 등록요건을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서비스 실질에 맞는 업종 등록·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전자금융업과 다른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겸업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회사 특성에 맞는 건전성 기준 마련 등 합리적 규제

실천계획①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IT·금융융합

	상반기	하반기	'16년	임기내
사전규제 최소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추진	규제최소화 지속추진	규제최소화 지속추진
기술중립성 원칙구현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책임부담 명확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추진		
규제에측성 강화	규제에측성 강화 지속 추진	규제에측성 강화 지속 추진	규제에측성 강화 지속 추진	규제에측성 강화 지속 추진
인터넷 전문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 마련	관련 법안 개정 추진		
금융상품 판매채널 혁신	온라인 기반 자산운용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판매채널 혁신 지속 추진	판매채널 혁신 지속 추진	판매채널 혁신 지속 추진
클라우드 펀딩 활성화	자본시장법 국회통과 노력 지속	자본시장법 통과시 클라우드 펀딩 하위규정 마련	클라우드펀딩 활성화	클라우드펀딩 활성화
빅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도입방안 마련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도입방안 마련		
결제분야 낡은규제 정비	모바일 카드 단독발급 허용			
핀테크 지원체계 구축	핀테크 지원센터 운영방안 마련	핀테크 지원센터 출범.운영		
핀테크 기업 자금조달 지원	벤처캐피탈의 투자방안 마련	정책금융기관 활용방안 마련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	시행령 및 하위규정 정비방안 마련		
전자금융업종 규율 재설계	법령 정비 실무 TF 구성.운영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마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	

**실천계획②**

**실물지원을 위한 자금중개기능 강화**

**가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 기업의「**창업-성장-회수-재도전**」단계별로 자금이 충분히 지원되어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험투자 활성화

**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창조적·혁신적 창업에 대한 과감한 자본투자를 통해 역동적 창업기반 마련**

○ 성장사다리펀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자체 등이 협업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펀드”**(가칭, 최대 6,000억원\*) 조성

- \* ①성장사다리펀드-대기업 매칭 “창조경제 혁신펀드” 총 5,100억원
- ②“지자체-대기업 등 매칭펀드” 최대 900억원 (중기청)

-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성장사다리 펀드 등 창조금융과의 **유기적 융합을 통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 지원

- \* 전북(14.11.24), 경북(14.12.17) 혁신센터와 사다리펀드 간 협력펀드 조성 MOU 체결
- 다른 15개 지역도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MOU 추진

○ 성장사다리펀드 운용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 「**창업→성장→회수**」 등 **기업성장 단계별 펀드 집행액\***을 확대

- \* **조성목표:** ('14)2.6조→('15)4.5조, **집행목표:** ('14)0.5조→('15)1.3조

○ **벤처투자의 위험만을 분리하여 사고파는 V-CDS\*** 상품을 개발하여 투자위험에 보수적인 투자자의 벤처투자를 유도

- \* **V-CDS(V-Credit Default Swap):**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CDS 보장매입자에서 CDS 보장매도자에게 이전하는 기존 신용파생상품(CDS)을 벤처기업 투자에 적용한 것으로 벤처투자 위험을 분리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는 상품

○ **클라우드 펀딩 법제화 및 후속 제도화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정책펀드 등과 연계한 초기 시장조성도 적극 추진

② **(벤처기업 성장촉진)** 보수적 운용의 틀에 갇힌 시중자금이 모험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사모펀드 등 활성화

- 사모펀드 활성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조속 통과를 지원하여 사모펀드 활성화 기반 조성
- 자본시장법 개정 후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에 맞추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사모펀드 추가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 \* 예) 사모펀드내 운용자격 단일화 등 사모펀드간 칸막이 제거, 사모펀드의 주목적 투자 규제 폐지 등

③ **(모험자본 회수구조 강화)** 모험자본 생태계의 병목지점인 회수 기능을 강화하여 ‘회수 →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구축

- ‘대우증권’ 매각 추진, 신용공여\* 및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대형 증권사 출현 기반 마련
  - \* 일반신용공여 및 기업신용공여 각각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
  - \*\* 외화신용공여 허용, 외화차입 신고요건 완화 등
- 중소기업 기업금융(IB)에 특화된 ‘중기 M&A 특화 증권사’를 육성하고 중기 M&A 지원 전문펀드(3년간 1조원) 조성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상장시 질적심사를 간소화하고 코스닥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코스피 수준으로 개선
  - \* 대용증권 사정비율 산정 기준, 회계사 징계수준에 따른 회계감사업무 제한 등
- 개인투자자의 코넥스 예탁금 규제 재검토 및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방안\* 마련 등 코넥스시장 수요기반 확충
  - \* 코넥스 투자비율에 따라 하이일드펀드에 공모주 차등배정 등
- 성장사다리펀드내 세컨더리펀드 조성(1,400억원), 정책성 펀드 구주(舊株)인수 유도 등 정책자금을 통한 회수자금을 확충

- K-OTC 거래종목 외의 비상장법인 주식거래를 위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모든 주식을 거래하는 「2부시장」 개설

- \* 벤처·중소기업 등 비상장법인 주식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시장

- 벤처펀드 등 투자조합(LP) 지분 거래 활성화 방안도 마련

④ (재도전 환경 구축) 혁신적 창업자가 중도에 실패하더라도 그간 경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마련

- 창업시점 제한 폐지\*, 가산보증료 감면\*\* 등을 통해 우수기술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15.1.2. 시행)

- \* (기존) '14.2월 이후 창업자에 한해 연대보증 면제 → (개선) '12.1월 이후

- \*\* A등급 이상 기업→ 가산보증료 전면 폐지, BBB 등급 이하 → 50bp 인하

- 창업기업이 아닌 기존기업중 신·기보 평가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주 본인의 보증의무 면제를 확대 적용('15.3월 시행)

- \* AA등급 이상은 자동으로 보증을 면제하고 A등급 이하는 기술성·사업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대상 선별 (보증 공급액의 약 20% 수준 추진)

- 신·기보의 구상채권 원금 감면을 활성화하고 주요 채권자인 지신보의 재창업지원위원회 참여를 지속 독려

- 신·기보 등의 재창업 지원을 받는 경우 불이익한 신용정보 공유 등의 불이익 폐지

- 중진공 및 신기보 등을 통한 재창업자금 공급 규모 확대  
(향후 5년간 최대 1.5조원)

- \* 중진공 등 재창업지원 용자 최대 1조원, 신·기보 재기지원 보증 최대 0.5조원

- 성장사다리펀드내 재기지원 펀드 등을 통해 재도전 의지가 있는 기업인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 \* 성장사다리펀드 : (기존) 1,130억원 → (확대) 2,530억원



## 나 기술금융 3.0으로의 도약

- ◆ 혁신성 평가, 인센티브 부여,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기술금융을 전 금융권의 영속적인 업무로 정착
- ◆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조성, 특허관리회사(NPE) 육성 등을 통해 기술금융의 중심축을 용자에서 투자로 이동
- ◆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파이낸스존 설치 등 현장에 가까운 투.용자 복합 기술금융 서비스 제공

### ① (기술금융 정착) 은행권의 영속적인 업무영역으로 정착

- '15년중 기술신용평가(TCB) 기반 대출을 3만2천건, 20조원 규모로 공급
  - 기술금융(TECH\*) 은행 혁신성 평가 결과에 따라 적극적인 정책 인센티브\*\*를 부여
    - \* TECH 평가: 기술금융 규모(Technology Financing), 기술 사업화 지원(Entrepreneurship), 신용지원(Credit Financing), 전문인력(Human Resources)
    - \*\* 신.기보 출연료, 온렌딩 대출의 배정 한도와 신용위험 분담비율 등을 차등화
- 기술신용평가와 정부 R&D사업, 조달사업, 벤처인증 등 연계를 확대하여 기술신용평가지장을 지속가능하게 조성
  - 기술신용평가지장 조성을 통한 참여기관 확대로 시장내 경쟁을 촉진하여 기술신용평가의 전문성 및 신뢰도 제고
- 금융회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동일 기업에 대한 복수 평가시 금융회사간 수수료 분담 허용 등 기술신용평가 비용구조 개선
- 업종별 기술신용등급 분포 등 수요자 맞춤형 기술정보DB (TDB) 서비스 제공으로 금융회사의 기술금융 역량 강화 유도

## ② (기술기반 투자 활성화) 기술가치평가에 따른 투자 강화

- 기술기반 투자 확대의 마중물로서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
  - \* 성장사다리펀드가 1,000억원, 민간이 2,000억원 출자
  - **기술평가 인프라(TCB·기술평가기관)를 활용하여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 지원**
- 기술 투자시장 조성을 위해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특허관리회사(NPE)로 육성**
  - \* Non Practicing Entity : 지재권 거래를 통해 지재권의 가격형성 촉진
  - 신규 IP펀드를 조성(1,000억원 이상: 산은·기은 각 500억원)하여 우수 IP 매입 및 수익화, 우수 IP 보유기업에 대한 투자 실시
    - \* NPE 전문성을 조속히 배양하기 위해 **국내외 IP 공급자를 활용한 IP Pool 구축, 해외 주요 NPE와의 전략적 제휴 등 추진**
- 금융회사가 기술가치평가를 활용하여 기술기반 투자를 확대 하도록 **기술가치평가 모듈화, 시나리오별 평가 등 실시**
- 산재되어 있는 기술가치평가정보를 TDB에 **집적하여 금융회사가 투자에 필요한 기술가치평가정보를 적시에 제공**

## ③ (원스톱 서비스 제공)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서비스 제공

- 혁신센터 내 'Finance Zone' 설치로 정책금융기관의 창업·중소기업 대상 창업·기술금융 등을 원스톱으로 안내·지원
  - \*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전문인력을 요일별로 순환 배치하여 지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종합 금융상담 및 기관별 금융상품과 맞춤형 연계
- 혁신센터와 성장사다리펀드간 **창조경제 연계펀드를 조성하여 지역 유망산업에 대한 투자지원 실시**
  - \* 지자체·대기업과 성장사다리펀드가 2:1로 매칭 출자(지자체별 100억원 한도)

**다** 정책금융을 통한 창조금융 생태계 지원 확대

- ◆ 모험자본 육성, 미래성장산업 투자, 유망서비스업 지원 등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도적·중추적 역할 확대
- ◆ 정책금융기관 기능조정, 핵심영역에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한정된 재원의 활용을 극대화

**1** (정책금융지원 확대) 정책금융이 창조경제에 중추적 역할 수행

- 유망서비스업, 신성장산업, 수출기업 등 미래성장산업에 '15년중 100조원 규모의 자금 공급

\* 미래성장산업 공급목표 : ('14년) 89조원 → ('15년) 100조원

- 인프라 구축 등 대형 투자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는 기업 투자촉진프로그램(3년간 30조원(산은 15조원)) 가동

- 기술기업,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투융자 복합지원을 확대하는 등 '통합 산업은행'의 투자기능 강화

\* 통합산은 투자규모 및 비중 : ('14년) 6.5조원(11%) → ('15년) 10.5조원(17%)

**2** (보증기관 운영체계 효율화) 보증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보증기관 업무개편 추진

- 중소기업(신보), 소상공인(지역신보) 보증기관간 업무중복 방지를 위한 역할·기능 재조정 방안 마련

- 장기고액 보증을 감축\*하여 창업기업 지원여력을 확충하고 우수기술 지원 확대를 위해 심사역량을 강화

\* 가산보증료 강화를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 보증 감축 유도

- 기술금융 평가결과,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보증 수혜도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출연료율 체계 개편

실천계획② 실물지원을 위한 자금중개기능 강화

	상반기	하반기	'16년	임기내
창업기업 투자확대	창조경제 혁신펀드 조성	V-CDS 상품개발 클라우드 펀딩 제도화	창업투자 활성화	창업투자 정착
벤처기업 성장촉진	사모펀드 제도개선 연구용역 진행	개편방안 마련	회수시장 활성화 지속 추진	회수시장 활성화 지속 추진
회수구조 강화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마련 코넥스 규제 재검토	중기M&A 특화 증권사 출범	모험자본 시장 활성화 지속 추진	모험자본 시장 활성화 지속 추진
재도전 환경구축	재기지원 펀드 대폭 확대 모태펀드 제도개선 재기심사기회 및 지원 확대	구상채무감면 활성화 재창업지원위원회 개편(지신보 참여 독려)	재창업자금 공급 확대(지속)	재창업자금 공급 확대(지속)
기술금융 정착	TECH 평가 실시 및 우수은행에 인센티브 제공	TDB 수집정보를 TCB 평가등급 등으로 확대	맞춤형 TDB 서비스 제공	기술금융박람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매년)
기술기반투자 활성화	기술가치 투자펀드 조성	산은의 NPE 역할 강화	기술가치 투자펀드 확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창조경제 혁신센터 개소시	창조경제 혁신센터 개소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원스톱 서비스 제공
정책금융지원 확대	정책금융 공급 (지속)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가동	정책금융 공급 (지속)	정책금융 공급 (지속)	정책금융 공급 (지속)
보증기관 운영체계 효율화	장기고액보증 감축방안 시행	신보-지신보역할 분담 방안 마련 보증기관 역량강화 방안 마련		

**실천계획③**

**금융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가 금융개혁 추진**

◆ 경쟁촉진, 금융역동성 제고를 위한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 및 보수적인 금융관행 혁신 등 금융개혁 지속 추진

1]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 금융산업의 자체 경쟁력 강화 등 부가 가치 창출을 위해 추가적인 금융규제개혁 추진**

- 금감원, 금융협회, 연구원 등과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 T/F’를 운영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1/4분기)

**< 금융규제개혁 과제(예) >**

-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여 금융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강화**
- **IT와 금융의 융합 촉진 등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여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금융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쉼 과정의 규제개선을 통해 모험자본시장을 활성화하여 창조경제 지원체계 구축**
- **기존 규제개혁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나 증장기 검토과제도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 **규제개혁 성과가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성과평가 및 보완 추진**

- **규제개혁 정비실적을 지속 점검하고 주요 규제개혁 사례 발굴·공유하여 규제개혁 성과를 확산**

- **특히,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지정하여 규제개혁이 미비한 분야를 집중 점검·개선**

\* 현장 의견 수렴 및 성과평가 등을 위해 간담회와 서베이 정례화 추진

② **(금융혁신 실천)** 생산적인 부분에 자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실물지원 강화 및 보수적 관행 개선 등 혁신 지속**

- 기술금융 확산, 보수적 관행개선 실적 등을 평가한 ‘은행 혁신성 평가’를 추진\*하고 **창의적인 금융인을 우대하는 문화 조성**

\* 평가결과를 은행의 보수총액과 함께 공시 및 정책금융 인센티브와 연계 추진

-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검사’ 관행을 적극 개선하여 시장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모범적 금융관행을 형성해 나가도록 유도

\* ①관행적 종합검사 축소, 컨설팅 중심 및 중대·취약부문에 검사역량 집중  
 ②인허가 업무의 신속성 제고, 불필요한 보고서 폐지 등 일하는 방식 개선

- 금융기관 성과보상체계 개선\* 추진

\* 임원의 성과평가시 ‘혁신성평가 결과’ 반영, 일반 직원에 대한 보상도 성과주의가 정착되도록 유도

③ **(추진체계)** 금융개혁 주제별 연속 세미나를 통해 세부 개혁방안을 도출하고 민간전문가 중심의 금융혁신위원회\*를 통해 지속 점검

\* 금융권의 ‘보수적 문화’ 혁신을 위해 민간전문가 9인으로 출범(‘14.9월)하여 ‘창조금융 실천계획’을 점검하고 은행 혁신성평가 도입, 감독관행 혁신 등 추진

- ’15.1/4분기까지 세부과제의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2/4분기부터 본격 실행 및 점검

< 세미나 추진일정(안) >

세부 과제	일정(잠정)
① 금융권 공동 세미나 (주최: 협회 공동)	2.3일(화)
②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관련 은행권 세미나 (주최: 은행연합회)	2.10일(화)
③ 은행 혁신성평가 세미나 (주최: 금융연구원)	2.13일(금)
④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 (주최: 금융감독원)	3월
⑤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3월
⑥ 빅데이터 활성화	3월
⑦ 파이낸스존 및 핀테크지원센터 효율적 운영	3월
⑧ 100세시대 대비 금융부문 역할 강화	3월
⑨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4월
⑩ 금융규제개혁	4월

## 나 금융환경 변화 대비 대응역량 강화

◆ 부동산시장 변화, 기후변화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나 금융권의 대응은 다소 미흡

⇒ 부동산 금융, 안전금융, 기후금융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금융권의 역량을 강화하여 금융서비스업 경쟁력 제고

### ① (부동산 금융 활성화) 부동산 시장의 여건변화\*에 맞춰 부동산 자금공급 기능 강화 및 부동산 금융의 선진·고도화 추진

\* 최근 부동산 시장은 매매·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전환 → 민간임대주택 수요 확대, 부동산 투자회수기간 장기화, 투자금 회수 불확실성 증대 등

- 부동산펀드 등 주요 투자자에 대한 부동산 투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자본공급 강화 유도
- 리스크 관리, 투자 회수, 유동화 등 주택금융 기법의 다양화·발전 지속 유도

### ② (주택금융 개선) 임대차시장의 구조적변화(전세→월세)에 맞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에 대한 보증 공급을 추진

- 졸업한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저리의 월세대출\* 공급 (국민주택기금)을 위해 주금공을 통한 월세대출 보증을 공급

\*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한도로 대출

- 향후 전월세 시장 움직임, 서민 주거부담 등을 고려하여 월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기능 확대 검토

### ③ (우리은행 민영화) 경영의 자율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우리은행의 다양한 매각방안 검토

**4] (안전금융 선도) 재난 피해방지 및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보험 역할 확대, 안전관련 설비투자 지원 등 금융지원 강화**

-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재해예방 기능 강화, 피해보상 수준상향 등 **재난안전보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안전점검범위를 기존 화재예방·소화시설 외에 **폭발·붕괴 위험으로 확대**하는 등 화재보험협회의 재난안전기능을 강화
  - 의무보험가입대상에 기존 화재 외 **폭발·붕괴로 인한 사고**를 추가하고 **신체손해배상\*** 외의 **재산피해배상**을 추가
    - \* 신체손해배상 한도 상향 : 8천만원 → 1억원
  - **대재해 채권(Catastrophe-Bond)**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 \* 대재해채권발행·보험위험 인수를 위한 SPV/SPC 등 자회사 설립 규정과 SPV 등에 대해 보험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 재보험 관련 규정 등 개정
- 안전관련 **노후시설 교체** 등에 대한 기업 **대출** 또는 **직접 투자** 지원을 지속하여 **안전관련 설비투자 촉진**

**5] (기후금융\* 활성화) 금융권의 기후금융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배출권거래의 안정적 정착 및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 \* 온실가스 배출감소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취약성 감소 및 복원력 증대를 위한 사업 지원을 목표로 하는 금융
- **배출권 거래시장\*이 개설('15.1.12일)되어 본격적으로 운영(환경부 주관)됨에 따라 거래시장의 안정적 정착 지원**
  - \* 한국거래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매매거래 및 그에 따른 청산결제업무 수행
    -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이 거래회원**으로 참여하여 **거래활성화 유도**
- 관계부처와 TF를 운영하여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역량 강화 등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 다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 금융업을 고부가 유망서비스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 금융의 외연확대를 지원하고 국내 금융환경을 국제화

### ① (세일즈 외교) 금융회사 해외진출 수요 조사 및 지원을 체계화

- 민·관 합동 정례 간담회를 통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애로 사항 및 금융인프라 수출 지원 수요 조사
- 정상회담·경제공동위·FTA협상 및 외국 금융당국간의 협의\*시 금융회사 해외진출 애로 사항을 중점 의제화
  - \* 정례협의(Shuttle Meeting)대상을 일본 외 중국·인니·베트남 등으로 확대, MOU 체결 지속 강화(인니 등은 MOU 기체결국의 금융회사만 진입 허용)
  - FATF 의장국 등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 IT 등 한국형 금융인프라의 수출을 대외협력사업·금융회사 해외진출 등과 연계하고 신흥국 당국자와의 네트워크 형성 지원\*
  - \* ASEAN 등 주요 신흥국 고위 당국자가 참석하는 국제금융협력포럼 정례회(연1회)
  - 한영 금융포럼 등 금융 선진국과의 국제포럼도 정례화하여 신규사업 지속 발굴 (예: 위안화 허브, 제3국 진출 위한 금융협력 강화)

### ② (해외진출 내실화) 금융회사의 단기적·보상성 해외진출 관행 혁파

- 규모·환경 등이 유사한 외국 금융회사의 성공사례 조사 및 임직원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체계 개선 유도
- 은행혁신성 평가의 해외진출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 금융 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
- 정책금융기관 해외진출 확대를 통해 글로벌 업무역량 강화
  - \* 주요 거점지역 금융수출 네트워크 확장, 해외진출 기업 지원 강화 도모 등

③ **(한국형 위안화 허브) 위안화 무역결제(공급·금융거래(수요) 확대**

- 확실한 방향성 아래 지속적·단계적 과제들을 포함한 중장기 '위안화 금융중심지 구축 로드맵'을 수립(기재부 협업)
  - 위안화 허브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과제를 발굴하여 중국 정부·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논의하는 위안화 컨퍼런스를 정례화\*
    - \* 제1차 위안화 컨퍼런스에서는 RQFII 쿼터 승인, 중국 투자의 과세 문제 등 현안을 논의
- 무역 기업과 금융회사에 대해 위안화 결제 및 위안화 금융 서비스 다양화를 장려하고 중국 금융 교육과정 마련 유도
- RQFII 등 對中 위안화 투자 관련 규제 개선
  - \* 종합금융투자사의 외화대출 및 외화RP 거래 허용, 공모펀드의 중국 국채 편입한도 확대 추진

④ **(금융중심지 활성화) 금융중심지 및 국제금융인력과의 네트워크 구축**

- 주요 금융중심지\*에 「금융중심지 활성화 글로벌 협의회」를 구축하여 한국 금융중심지 홍보, 금융전문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 뉴욕, 런던, 홍콩, 싱가포르, 프랑크푸르트, 동경, 북경·상해 등
- 국제컨퍼런스 및 해외금융인 면담시 관계를 맺은 국제 금융인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우리나라 금융중심지 국제적 인지도 제고

⑤ **(FTA 대응 역량 강화) FTA 내용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 통상협정과 위반되는 정책 수립 및 검사·감독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협정 원칙, FTA 협정 내용 및 분쟁 사례 정리·발간
- 외국계 금융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 정책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외국 공관·금융사와의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

## 실천계획③ 금융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상반기	하반기	'16년	임기내
규제개혁 점검 및 평가	규제개혁 성과평가 서베이	금융규제 정비의 달 운영(9월)	규제개혁 지속추진	규제개혁 지속추진
제2차 규제개혁 추진	규제개혁 방안 마련	추진방안 발표	규제개혁 지속추진	규제개혁 지속추진
금융혁신 추진	은행혁신성 평가	은행혁신성 평가	은행혁신문화 정착	은행혁신문화 정착
금융혁신 위원회 운영	매월 개최	매월 개최	매월 개최	매월 개최
부동산금융 활성화	부동산 투자규제 개선	부동산금융 활성화 지속	부동산금융 활성화 지속	부동산금융 활성화 지속
주택금융 개선	취업준비생 등에 월세대출 보증 공급	월세대출 보증 공급 확대 검토	임대시장 안정화 지속	임대시장 안정화 지속
우리은행 민영화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검토	우리은행 민영화		
안전금융선도	화재보험법 개정안 마련  대재해채권 도입방안 마련	화재보험법 개정  대재해채권 관련 규정 개정	보험회사의 재난예방기능 지속 강화	
기후금융 활성화	배출권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세일즈외교	한영 금융협력 포럼개최	신흥국 초청국제 금융협력포럼개최	세일즈 외교 지속 추진	세일즈 외교 지속 추진
해외진출 내실화	외국 금융회사 성공사례 조사	해외진출 성과 평가지표 마련	금융회사 해외진출 추진 현황 점검	현황 점검 지속 및 성과 평가지표 평가
한국형 위안화 허브	위안화 투자 규제 개선	위안화 역외금융허브 로드맵 수립	위안화 허브 로드맵 이행	위안화 허브 로드맵 이행
금융중심지 활성화	금융중심지 활성화 글로벌 협의회 시범지역 선정	홍보실시 및 네트워크 강화		금융중심지 활성화 글로벌 협의회 구축
FTA 대응 역량 강화	전문가 TF 구성	해외 분쟁 및 당국 대응사례 등 정리·발간		

## 2. 금융시장 신뢰 확립

금융시장의 신뢰를 확립하여 금융산업을 새롭게 도약시키겠습니다.

### < 기본 방향 >

- ◆ 금융 취약계층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지원확대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 회복
  -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 고령화 대비 금융지원 강화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금융보안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불안 해소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등 금융시장 참여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여 금융부문 신뢰 제고

#### ■ [실천계획④]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 가.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
- 나. 취약계층 금융환경 개선
- 다. 고령화 대비 금융지원 강화

#### ■ [실천계획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 가. 금융소비자보호 인프라 강화
- 나.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 다. 금융보안 확립

#### ■ [실천계획⑥] 금융부문 신뢰 제고

- 가. 금융권 신뢰제고 환경조성
- 나. 시장 및 거래제도 투명성 확보
- 나. 금융감독 선진화

**실천계획④**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가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

◆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편 등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①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로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추진

\*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법」 국회제출('14년말)

- 미소금융재단, 신복위, 행복기금 업무조직을 통합하고 근로자 보증(햇살론), 서민금융 인프라 기능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
-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자금지원, 채무조정과 함께 종합상담, 고용·복지·주거 연계지원, 금융상품 알선 등 종합적 지원

② **(서민금융상품 개편)**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상품 개편

- 주거·고용·복지 등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을 도입하고 서민의 제도금융권 정착을 지원하는 '징검다리 제도'\* 도입

\*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가 제도금융권 안착 前 이용하는 중간단계 상품

③ **(맞춤형 채무조정)** 수요자별 상환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금융 소외계층의 재기를 적극 지원

- 상환능력을 감안한 사적채무조정 감면을 체계 개편, 신청요건 완화 등 사적채무조정 중도탈락자 지원 강화

④ **(서민금융 지역 네트워크 개편)** 원스톱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지속 확대

- 서민금융 상담센터(지자체 내)를 통합지원센터로 최대한 확대·개편하고 기존 유관기관 '지역조직'은 통합·이관 추진
- 고용복지+센터 내 서민금융 상담센터 추가 개소

## 나 취약계층 금융환경 개선

◆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대학생 등 청년층의 고금리 대출 등의 문제도 상존

⇒ 금융취약계층 보호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금융환경을 지속 개선

① **(취약계층 피해예방 및 권리구제 강화)** 취약계층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

- **(중점검사)** 취약계층에 대한 판매행위 규제 준수여부를 중점 검사사항으로 운영하고 위반시 엄격한 제재조치를 적용
- **(금융상품 광고 정비)** 위험성을 고지하는 경고문구(과다채무의 위험성, 손실가능성 등)가 쉽게 인지되도록 형식규제를 강화

\* (저축은행) 경고문구 신설 / (금투·보험·여전·대부) 음성안내 의무화, 최소 노출시간 상향(예: 전체광고시간의 1/5 → 1/3 이상) 등

- 대부업 광고규제를 강화하여 광고시 표시해야할 필수내용을 정비하고 허위·과장 광고 규제를 강화

- 완화된 보험광고규제를 적용하는 보험 이미지광고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불안전판매 가능성을 축소

\* ① 보험상품의 개괄적인 내용만을 1분 이내에 설명, ② 보험상품의 주요 특징을 3회 이상 반복 금지

- **(청약철회권 도입)** 금융취약계층에 대해 금소법 제정 이전이라도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 우선 적용을 검토
- **(분쟁조정제도 개선)**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 금감원 분쟁 조정제도의 운영방식을 개선

\* 경미한 민원에 대해서는 신청순서와 무관하게 Fast-Track으로 처리하고 소액사건 전담 소위원회 도입 방안을 검토

② (대학생·청년층 지원)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대학생·청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

- (생활자금 추가 지원) 대학생이 고금리 대출 대신 이용가능한 저금리대출(예: 한국장학재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 \*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연 200~300만원)를 2.9% 수준으로 대출중
  - 저소득·저신용 대학생·청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 대출 이외에 추가적인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
    - \* 예) 최대 800만원(4%대)까지 지원, 거치기간도 연장(1년 → 졸업시까지 연장)
- (고금리대출 전환) 장학재단 대출만으로 기존 고금리 대출의 전환이 어려운 대학생·청년에게 전환대출 상품을 추가 지원
  - \* 현행 신복위의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보증상품(최대 1,000만원, 6.0%)을 개편
  - 대출금리·보증료를 인하하고 거치기간도 연장하여 대학생 등의 고금리 채무부담을 경감
- (신용회복 지원) 대학생·청년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를 적극 지원
  - 신용회복지원대상을 대학생에서 청년층으로 확대하고 졸업 후 유예기간을 최대한 연장(예: 현행 2년 → 4년까지 가능)

③ (금융교육 강화)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상담 프로그램 확대

-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15.1월 예정)를 토대로 취약계층 대상 교육교재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
- 금융사랑방버스(찾아가는 금융상담·교육)의 격오지·업무시간 외 운영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금융상담 접근성 제고

## 다 고령화 대비 금융지원 강화

◆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 국민들의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 ① (노후대비 상품개발) 개인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연금상품 공급

○ 평균수명보다 장수할 경우를 대비해 고연령(예: 85세) 도달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 개발

○ 노인장기요양연금 상품의 장기 간병연금 지급대상을 현행 보험사 임의 기준에서 복지부 노인장기요양인 기준으로 확대\*

\* 현행 보험사 상품은 복지부 노인장기요양인 1~2급에 해당하는 기준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1~5급까지 확대

○ 만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인에 비해 높은 연금액을 제공하는 상품을 개발

○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주택연금과 의료비 보장보험의 연계 등을 통해 주택연금의 이용 가능성 제고 및 노후생활 안정 지원

\* 주택소유자 60세 이상 → 부부 일방이 60세 이상(주금공법 개정)

### ② (사적보험 개선) 사적건강보험의 현황·상품구조 등의 분석을 통해 보험료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관리가 미흡한 보험회사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20%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의무화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은 현행 수준(200만원)을 유지하여 취약계층 부담을 완화

○ 비급여의료비 적정성 확인\* 등 보험금 지급관리를 강화하고 보험료 안내강화 등 공시체계를 개선

\* 예) 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와 같이 의료비 전문심사기관인 심평원 등이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 추진



③ **(연금소비자 보호)** 연금상품의 판매·운용·공시 소단계를 포괄하는 소비자 보호 준칙을 마련하여 업권별 상이한 규제체계 정비

- 판매단계에서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비전문가인 연금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비교공시체계를 마련
- \* 소비자의 상품 비교가 용이하도록 적립률 등 중요항목을 통합공시

④ **(노후설계 인프라 구축)** 연금정보현황 제공, 교육·컨설팅, 실태조사 추진 등을 통해 체계적인 노후대비 지원

- 연금포털을 통해 연금 가입정보, 미래 예상연금액과 노후 적정 생활비 등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 미래설계센터를 금년중 시범운영하여 노후대비에 취약한 중소기업 근로자, 저소득층에 1:1 노후재무설계 컨설팅 등\* 지원
- \* 중소기업 등에 찾아가는 교육·상담을 실시(퇴직연금 도입대비 인식 제고 등)하는 등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노후대비 금융역량 강화
- 국민의 연금가입 실태조사, 연금정책·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연금정책 마련 등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

⑤ **(퇴직연금 활성화)** 퇴직연금 운용 규제 전면 개선 등을 통해 노후 대비 자산관리서비스 선진화

- 퇴직연금 운용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DC/IRP형의 위험 자산 운용한도를 확대(40%→70%)
- 일임형 상품 및 디폴트 옵션\* 도입, 독자적 투자자 보호 준칙 마련 등을 통해 자산관리 전문성 및 투자자 보호 강화(고용부 협의)
- \* 퇴직연금사업자별 대표 포트폴리오를 등록하고 별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이를 제시

실천계획④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상반기	하반기	'16년	임기내
서민금융총괄 기구 설립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서민금융 onestop서비스	서민금융 onestop서비스
서민금융 상품개편	서민금융 상품 개편 종합방안 마련	신상품 도입 및 상품통합 협의	서민금융 상품 통합 및 개편	서민금융 상품지원 지속
맞춤형 채무조정	채무조정제도 개편안 마련 (관계기관 협의)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서민금융 지역네트워크 개편	타부처 및 지자체 협의	통합지원센터 등 상담센터 확대	통합지원센터 등 상담센터 확대	통합지원센터 등 상담센터 확대
취약계층 권리 구제 등 강화	청약철회권 적용방안 및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마련  금감원 중점검사 실시	광고 관련 법령 및 규정개정  금감원 중점검사 실시		
대학생· 청년층 지원	장학재단과 연계방안 협의  서민금융상품 개편방안 마련·시행	대학생·청년층 금융애로 해소 지원 지속	대학생·청년층 금융애로 해소 지원 지속	대학생·청년층 금융애로 해소 지원 지속
금융교육강화	교육교재 개발	금융사랑방서비스 운영확대	금융교육 지속	금융교육 지속
상품개발	주택연금과 의료비 보장보험 연계상품 개발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주금공법 개정)	상품개발	상품개발
사적보험 개선	상품구조 및 공시제도 개선	보험금 지급관리 위한 관련부처 협의 및 법규개정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 확인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 확인강화
연금소비자 보호	공시방안 마련	규정개정 추진		
노후설계 인프라 구축	연금포털 구축	맞춤형 연금제도 수립 방안 마련	인프라 고도화	인프라 고도화
퇴직연금 활성화	자산운용 관련 규정 개정	디폴트옵션 및 일임형 계약 도입	자산관리서비스 지속개선	자산관리서비스 지속 개선

**실천계획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가 금융소비자보호 인프라 확립**

◆ 금융소비자 정책이 업권별로 추진됨에 따라 **종합적 시각의 방향제시가 미흡**

⇒ **상시적·체계적인 금융소비자 정책 추진체계를 확립**

① **(금융소비자 정책 추진체계 확립)** 금융소비자 정책이 종합적 시각에서 상시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감독기구 신설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등 개정 추진
-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14.12월 既 발표)에 반영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구체화하고 차질 없이 시행

\* 금소법 제정 후에는 동 종합계획을 토대로 ‘제1차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매 3년마다 수립

-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평가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도입(민원발생평가와 통합하여 종합등급 산출, ‘16년 시행)

\* 종합등급은 공개하고 상·하위사에 대해 감독·검사시 incentive, penalty 부여

② **(Feedback·협업 시스템 마련)** 금융소비자 정책의 실수요자인 금융소비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제공

- ’15년에 제1차 금융소비자 Survey를 시행하고 향후 매3년마다 실시하는 등 금융소비자 Survey를 정례화

- 금융당국·소비자단체·금융업권·학계가 참여하는 자문패널을 구성하고 정기적 간담회를 개최

③ **(대부업 관리체계 개편)** 전국적으로 영업하는 대형 대부업체 등에 대해 금융위·금감원에서 직접 등록 및 검사·제재 수행

**나**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 분야별 금융관행 개선, 기존 금융관행 개선협의회 상시화 등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지속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제고

① **(소비자 불편개선)** 민원분석 등을 통해 건별로 발굴하던 금융관행 개선방식을 주제별·분야별 점검 중심으로 개선

○ 과거 소비자 불만이 높은 분야를 선정하고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일괄개선

\* 예) SMS 등 안내·통지 점검·개선, 상품 판매절차 개선 점검 등 분야별 개선

② **(관행개선 상시화)** ‘금융관행 개선협의회’를 확대 개편하여 상시적으로 금융관행을 발굴·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2015년 주요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 >

□ **(카드이용자 편의제고)** 금융소비자들이 카드 이용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관행을 개선

○ 일부 가맹점에서 제공하고 있는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가 편의점,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되도록 유도

○ 카드 해지시 휴대폰 요금 자동납부 등 종전 카드에서 신규 카드로 이전될 필요가 있는 거래를 고객에게 전달

□ **(보험소비자의 이해도제고)** 소비자가 관여하는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이해도평가를 통해 보다 쉽게 안내자료를 기술토록 유도

\*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변액보험운용설명서 등

\*\*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도평가는 既시행 중이며, 이를 통해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보다 쉽게 기술함으로써 소비자의 이해가능성을 높임

□ **(대출 관련 소비자 권익제고)**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하여 은행이 대출 계약기간 내 행사횟수 제한 등을 통해 불합리하게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선

\* 소비자가 대출 약정기간 중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 은행에 금리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다 금융보안 강화

◆ 개인정보보호 및 금융보안 관련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금융업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필요

⇒ 신용정보 보호체계 전면 개편, 금융보안원 안착 등 추진

### 1] (신용정보 보호체계 개편) 신용정보보호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신용정보와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체계의 전면적 개편\* 추진

\* 신용정보 보호대상을 **포괄주의로 전환**하여 모든 금융관련 정보에 대한 금융회사의 보호의무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전부 개정안)

○ **신용정보의 처리 절차를 엄격화\***하여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제재 상향** 등 정보주체의 권리구제 강화

\* 제3자 제공절차를 엄격화, 불필요한 정보 삭제조항 신설, 동의없는 영업 목적 문자전송 금지, 금융상품모집인 등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 등(정무위 案)

○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공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편

\* 집중기관내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위원 중 일정비율 이상의 공익위원 선임의 의무화

-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집중기관과 민간 신용조회회사(CB)간 업무차별화도 검토

○ 최소처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현재 금융회사가 처리 중인 정보에 대한 전수조사와 제로베이스에서 필요성 재검토 추진

- 「신용정보위원회」(가칭)을 구성하여 개별 신용정보별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용정보 수집범위 재조정

- ② (카드 이용자 보호 강화) VAN사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IC단말기 전환도 차질없이 이행
- VAN사를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하고 결제안전성 및 신용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
  -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금융위(→여신협회 위탁)에 등록된 카드 단말기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 ③ (금융보안원 안착) 금융보안원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금융권 IT 보안을 획기적으로 강화
- 보안사각지대 해소\*, 금융회사의 침해의심정보 공유, 업권간 상이한 보안관제방식 통합 등 추진
    - \* 보안관제가 필요한 금융회사 전체를 정보공유분석센터(ISAC)와 연계
  - 보안기술평가 제도 운영 등 IT와 금융의 융합 기술 지원과 소비자 보호 및 새로운 보안 기술에 대한 지원 기능 강화
- ④ (전자금융사기 대응) 대표통장 근절, 금융사기 이용전화 번호 정지 등 금융사기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맞춤형 대책 수립
- 대표통장의 발행·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통장 과다 발급 금융회사에 대한 개선계획 제출명령 및 임직원 제재
    - 한편, 통장발급 관련 민원을 금감원 민원평가에서 제외하여 의심거래자에 대한 적극적인 통장발급 거절을 유도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대표통장 불법광고 등에 이용된 금융사기 이용전화번호 정지
  -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효과적인 금융사기 대응 방안 강구

## 실천계획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상반기	하반기	'16년	임기내
소비자 정책 추진체계 확립	금융위법 개정 금소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시행 ('15년실적 대상)	
협업 시스템 마련	소비자정책 자문패널 간담회 개최	금융소비자 Survey 실시	소비자 의견 수렴 지속	소비자 의견 수렴 지속
대부업 관리체계 개편	대부업법 개정 추진	대부업법 개정	대부업법 하위법령 정비	대부업 관리감독 지속
소비자불편 개선	연중 발굴·개선	연중 발굴·개선	연중 발굴·개선	연중 발굴·개선
관행개선 상시화	금융관행개선 협의회 확대개편 검토	금융관행개선 협의회 확대개편 추진	관행개선 상시화	관행개선 상시화
신용정보 보호체계 개편	신용정보법 하위법령 정비 신용정보법개정안 국회 제출 신용정보 집중체계 개편	신용정보법전부 개정 신용정보 집중체계 개편		
카드이용자 보호 강화	여전법 시행령 마련	VAN사 및 카드단말기 등록제 도입		
금융보안원 안착	금융보안원 설립	침해정보공유 보안관제방식통합 보안기술평가제도 운영	금융보안 강화 지속	금융보안 강화 지속
전자금융사기 대응	민원평가제도 개선	개선계획제출명령 보이스피싱법 개정	전자금융사기 예방 지속	전자금융사기 예방 지속

\* 국회 제출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일정 변경가능

**실천계획⑥**

**금융부문 신뢰 제고**

**가 금융권 신뢰제고 환경조성**

◆ 반복되는 금융사고, 일부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난맥상 등으로 축소된 금융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회복하는 환경조성

- ① **(건전한 지배구조 정립)**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14.12)에 따라 금융회사 연차보고서 작성·공시 및 외부기관이 평가
  - \* 하반기 이후 은행, 금융지주사부터 이행상황 점검(제2금융권은 '16년부터)
  - 개별 금융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외이사 결격요건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요건은 정비
- ② **(기관투자자 책임준칙)**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해 한국판 「Stewardship Code\*」 제정추진
  - \*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정책 공시 및 활동 보고, 주주권 행사 지침 마련 등
  - 기관투자자 경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요인도 합리화
- ③ **(내부통제 강화)** 금융회사내의 내부통제 컨트롤 타워가 잘 작동 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제도를 정비
  - 준법감시인의 직무 독립성 제고 및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 등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 ④ **(금융 윤리규범 정립)** 금융산업의 신뢰회복, 금융회사의 윤리 의식 변혁을 위한 금융권의 윤리규범을 협회중심으로 재정비
- ⑤ **(금융의날 제정)** 저축의 날을 '금융의 날'로 확대 개편하고 저축·기술금융·서민금융 등 분야별 포상을 실시



**나** 시장 및 거래질서 투명성 확보

◆ **공시·회계·신용평가 등 시장인프라 개선 및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통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① **(공시제도 합리화)** 사전적 공시부담은 전반적으로 완화하되, 공시에 따른 사후적 책임성은 강화하여 공시의 신뢰 확보
  - 불필요한 공시부담을 발생시키거나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공시항목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자율공시로 전환
    - \* 예) 생산활동 재개, 기술도입·이전계약 사항 등은 자율공시로 이전
  - 불성실한 공시가 지속될 경우, 거래소가 기업의 공시책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책임성 확보
  
- ② **(독자신용등급 도입)** 계열그룹 지원 없는 기업 자체적인 신용도를 최종 등급과 병기하는 “독자신용등급”제도 도입
  - ※ 독자신용등급이라는 명칭이 신용등급을 대체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명칭의 변경(예 : 자체신용도)도 검토
  
- ③ **(회계규율 강화)** 회계 사각지대에 대한 회계규율을 강화\*하고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 유한회사에 대해 외부감사 의무화, 대형 비상장법인은 상장사에 준하여 규율
  - \*\* 회계품질 관리제도에 대한 평가 도입 등
  
- ④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율)** 신중 시장질서 교란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14.12.9, 국회통과)에 따라 하위규정 정비\* 및 본격 규율
  - \* 후속입법 추진 : 자본시장법 시행령(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예외)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과징금 부과기준)
  
- ⑤ **(주가조작 단속)** 유관기관간 협업체계를 정착시켜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조정기능\*을 강화
  -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검찰에 신속히 통보하는**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활용을 통해 주가조작 혐의자 등의 도주 및 증거인멸에 적극 대처

## 다 금융감독 선진화

◆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응체계는 강화하고 경쟁과 혁신을 가로막던 불합리한 감독관행은 정비하는 등 금융감독 선진화

1] (금융그룹별 감독도입) 금융그룹에 의한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그룹별 감독 시스템」 추진방안 마련

○ 복합금융그룹\*의 범위를 정의하고 내부통제·준법감시 시스템 구축의무 부여 및 그룹전체에 대한 건전성 감독규제 도입 검토

\* 예) 사실상 금융지주그룹,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사 등

○ 장기적으로는 현행 금융감독원의 검사체계를 권역별 체계에서 금융그룹별 중심으로 전환 추진

2] (제재제도 선진화) 금융권 보신주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도한 제재관행을 개선

○ 직원 직접제재 원칙 폐지 등 과도한 신분 제재관행을 지양하고 과징금 등 금전 제재 위주로 제재 시스템 개편 추진

○ 각 업권별 상이한 제재제도의 형평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 제재업무를 위해 제재심을 개편하고 시효제도 도입

3] (금융정보분석 선진화) 탈세 방지 및 지하경제 양성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FIU의 심사분석 시스템 및 기법을 개선

○ 법 집행기관(국세청, 관세청 등)의 특성과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FIU에 지속 축적되고 있으나 그간 활용이 다소 미비했던 고액 현금거래보고(CTR) 정보의 활용방안 마련

4] (업무위탁 개선) 금융회사가 업무위탁시 승인·보고 의무 완화 및 업무위탁 가능범위·재위탁 여부 명확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및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

## 실천계획⑥ 금융부문 신뢰 제고

	상반기	하반기	'16년	임기내
건전한 지배구조 정립	연차보고서 작성 및 평가	사외이사 결격요건 관련 규정 검토	시행령 개정	
기관투자자 책임준칙	스튜어드십코드 제정			
내부통제 강화		모범규준 마련	의견수렴후 시행	
금융 윤리규범 정립	업권별 TF 구성 · 운영	윤리규범 마련		
금융의날 제정	관계부처 협의	금융의 날 행사 실시	금융의 날 행사 실시	금융의 날 행사 실시
공시부담 완화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공시규정 시행	거래소 공시 지속 운영	거래소 공시 지속 운영
독자신용등급제 도입	모범규준 개정	독자신용등급 시행	독자신용등급 지속 운영	독자신용등급 지속 운영
회계규율 강화	정부입법 절차 추진	법안 국회 제출		
질서위반에 대한 제재정비	하위규정 정비	자본시장법 시행	시장질서 교란행위 지속 단속	시장질서 교란행위 지속 단속
주가조작 단속	주가조작 단속 지속	주가조작 단속 지속	주가조작 단속 지속	주가조작 단속 지속
금융그룹별 감독도입	해외 사례 조사 국내 금융그룹 현황 분석	공청회 개최 및 감독방안 마련	금융그룹 감독방안 시행	
제재제도 선진화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	관련법령 개정안 국회제출		
금융정보분석 선진화	관계부처 TF 운영	맞춤형정보제공 시스템 및 CTR 정보 활용방안 마련	지하경제양성화 지속 지원	지하경제양성화 지속 지원
업무위탁 개선	관련 규정 개정	외국계금융회사 간담회 개최		

### 3. 금융안정 강화

금융안정을 확고히 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 < 기본 방향 >

- ◆ 대내외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해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경기회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
  -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가계 부채 총량관리 및 구조개혁을 지속 추진
  - 기업 부실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선제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
  -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내외 리스크 요인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산업의 위기 대응역량을 제고

#### ■ [실천계획⑦]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 가. 가계부채 구조개선
- 나. 취약부문 집중관리
- 다.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 ■ [실천계획⑧] 상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대응

- 가. 상시적 기업 구조조정 추진
- 나. 시장친화적 재무구조 개선 지원
- 다. 취약산업 정책금융 지원 강화

#### ■ [실천계획⑨]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 가. 대외 리스크 요인 점검 및 대응
- 나. 국내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 다. 금융인프라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실천계획⑦**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가 가계부채 구조개선**

◆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증가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대출 구조도 획기적으로 개선

① (가계부채 연착륙)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목표 수준을 준수하도록 유도

-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계소득 제고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

② (가계부채 구조개선)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 정착

- 기존의 신규대출 상품인 ‘적격대출’을 확대·활용하여 ’15년 중 20조원 한도로 대출전환 추진

\* 필요시 유동화 여력 증대를 위해 주금공법을 개정하여 자본금 한도(현재 2조원)확대 추진

- 대출 전환에 따라 차주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완화 등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③ (유인체계 정비) 금융권 스스로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

- 은행권 혁신성 평가지표에 구조개선 실적을 반영

- 구조개선 실적에 연동하여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감면 추진

\* 현재는 개별 대출별로 만기, 상환구조, 금리구조에 따라 0.05%~0.30%의 출연료 부담중(가계부채 구조개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는 없는 상황)

## 나 취약부문 집중관리

◆ 처음부터 과도한 부채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한편,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부문 모니터링 및 지원 강화

① **(상환능력 심사 강화)**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내실화하여 ‘처음부터 갚아 나갈 수 있는 구조’를 정착(금융소비자 보호 측면)

○ 금융회사가 대출 취급시 소득 등 차주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심사

\* 은행권 주담대(328조원, 13년말) 중 소득 파악된 대출은 64.5% 수준, 상호금융권 실태조사 결과 DTI 미적용 대출은 대부분 상환능력 심사 생략

○ 금리 상승 등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차주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상환능력 심사시 이를 감안하도록 유도

② **(모니터링 강화)** 부채 부담이 큰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실 가능성을 적기에 파악

○ 저소득층을 유형별(주택보유여부, 연령, 종사상 지위 등)로 구분하여 정교하게 모니터링

○ 자영업자 대출은 업종별\*·담보별 대출 통계를 세분화하여 취약업종·담보 대출을 선제적으로 관리

\* 대출금액이 업종별(음식업, 숙박업 등)로 세분화하여 집계될 수 있도록 구축

③ **(맞춤형 금융지원)** ‘빛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조’를 구축

○ 이자유예·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지속하여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게 재기 기회를 부여

## 다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 상호금융권의 과도한 외형확장을 억제하는 한편, 부동산담보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위험의 전이·확산 가능성 방지

① (과도한 수신 증가 억제) 가계대출 증가\*의 근원인 과도한 수신 증가를 지속적으로 억제

\* 가계대출 증가율(%) : (08~11년 평균)14.1 (12년)6.0 (13년)7.3 (14.9월) 11.3 ↔은행 6.2

○ 고금리 수신유치 억제, 수신 급증 조합에 대한 집중 검사 실시

○ 수신 확대의 근본 요인인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現 조세특례 제한법(제89조의3)에 계획된 단계적 저율과세로 전환 후 폐지 추진

\* ('15년까지) 비과세 → ('16년) 5% → ('17년 이후) 9% 과세 (일반 세율 14%)

② (부동산담보대출 관리 강화) 주담대 LTV·DTI 규제 합리화 이후 비주택담보대출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관리

○ 자체 내규로 LTV 규제중인 상가·토지담보대출에 대해 담보평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LTV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 예) 지역별·담보종류별 경매낙찰가율 등을 감안하여 기본한도 부여 등

○ 조합의 외부 감정평가사 선정·운영방식 등을 점검·보완

③ (대출구조 개선) 주택담보대출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를 위해 이행계획 마련 유도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17년말까지 15% 달성 목표 ('14.12월말 현재 2.6%)

④ (감독기능 강화) 금감원, 중앙회의 검사 인력 강화 및 상호 금융정책협의회 연 2회 고위급(금융위 부위원장 주제)으로 확대 개최

## 실천계획⑦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상반기	하반기	'16년	임기내
가계부채 연착륙	가계부채 증가율 모니터링	가계부채 증가율 모니터링	가계부채 증가율 모니터링	가계소득 제고방안 추진
가계부채 구조개선	가계대출 전환 추진	가계부채 구조개선 실적 점검	주금공 수권자본금 확대 (주금공법 개정)	가계부채 구조개선 지속
유인체계 정비	은행권 혁신성 평가지표 반영	주신보 출연료 체계 개선		
상환능력 심사 강화	상환능력 심사 관행 정착	상환능력 심사 관행 정착	상환능력 심사 관행 정착	상환능력 심사 관행 정착
모니터링 강화	자영업자 대출통계 세분화	저소득층 대출 모니터링 강화		
맞춤형 금융지원	프리워크아웃 지원 지속	프리워크아웃 지원 지속	프리워크아웃 지원 지속	프리워크아웃 지원 지속
과도한 수신증가 억제	수신급증 조합 집중검사	수신급증 조합 집중검사	수신급증 조합 집중검사	예탁금 비과세 저율과세 전환
부동산담보대출 관리 강화	상가·토지담보 대출 실태조사 LTV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외부감정평가사 선정 운영방식 등 점검	지속점검	
대출구조 개선	구조개선 이행계획 징구	구조개선 추진 현황 점검	구조개선 추진 현황 점검	구조개선 추진 현황 점검
감독기능 강화	상호금융 정책협의회 확대 개최	금감원, 중앙회 검사 인력 강화	상호금융 정책협의회 지속개최	상호금융 정책협의회 지속개최



**실천계획⑧**

**상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대응**

**가 상시적 기업 구조조정 추진**

◆ 기업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규모 및 신용도에 따른 양극화 현상으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수요 증대  
 ⇒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여 우리 경제내 잠재적 불안요인 조기 해소

**① (상시·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상시적 위험진단 및 구조조정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 유도**

- (그룹) 재무구조평가(4월), 재무구조개선약정(5월)에 따른 자구 계획 이행 및 금융지원으로 대기업그룹의 부실 위험 해소
- (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고 경영 정상화 가능성에 따라 워크아웃 등 추진

\* 개별대기업 정기신용위험평가 : 4~6월, 중소기업 정기신용위험평가 : 7~10월

**②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현행 기촉법의 효력만료('15년말) 이전에 기촉법 상시화 등을 추진하여 제도적 안정성 확보**

- 그간 제기된 기촉법의 법률적·실무적 문제점을 보완\*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상시법제화 등 추진

\* (대상채권) 금융기관 채권 → 시장성 차입금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채권

\* (대상기업)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 → 모든 기업

**③ (주채무계열 평가제도 개선) 현행 주채무계열 평가제도를 점검하여 평가방식의 합리성 및 객관성 제고 방안 강구**

- 모든 산업에 대한 획일적 평가를 지양하고 산업별 특성을 보다 탄력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모색

## 나 시장친화적 재무구조 개선 지원

◆ 부실위험이 현재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판 제공 필요

⇒ 일시적 재무적 곤경에 빠진 기업에 대한 시장친화적 재무구조 개선 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 기회 확보

### ① (선박은행 조성) 해운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중고선박을 매입.지원하는 선박은행(Tonnage Bank) 체계 구축

- 자산관리공사와 민간투자자가 선박펀드를 출자.조성하고 해운보증기구와 연계\*하여 5년간 1조원 규모의 중고선박 매입 지원
  - \* 해운보증기구는 선박펀드의 원활한 지원 유인을 위해 후순위 보증지원
- 선박펀드 조성, 매입선박 선정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지원 개시

### ② (중소기업 구조개선 지원)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산매입 후 임대지원, 중소기업 패스트랙 연장 등 추진

- 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후 임대지원(S&LB)’을 통해 유동성 위기 극복 지원
  - \* 필요시, 금융회사 등의 매칭자금 지원을 통해 조기 정상화 추진
- 중소기업 패스트트랙\*을 ’15년말까지 연장하여 일시적 유동성 부족 중소기업의 조기 경영 정상화 유도
  - \* ’08년 이후 ’14.10월말까지 8,720개 기업에 34.7조원 지원

### ③ (민간자본을 통한 경영정상화 지원) 기업재무안정 PEF 등을 활용하여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적극적 채무조정 지원

- 채권은행별로 분산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정상화를 추진하는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체계 마련

## 다 취약산업 정책금융 지원 강화

◆ 경기민감업종 및 취약업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참여를 유도

### ① (기업정상화 촉진펀드 활성화)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기업정상화 촉진 PEF 지원 확대

- 정책금융기관, 채권은행, 연기금 등이 함께 출자하는 PEF를 조성하여 당면한 구조조정 수요에 대응해 민간의 매수여력 보완
- 참여기관 간 투자협약체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1조원 지원하고 구조조정 수요 등을 감안하여 추가 조성 검토

### ② (해운보증기구 출범) 해운보증기구 설립 및 업무개시

- 선박건조 프로젝트 후순위보증 지원 등을 통해 경기민감업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 지원
- 운영성과 등을 보아 발전.항공 등 여타 프로젝트 지원 고려

### ③ (해양금융 지원 활성화)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선박.해양금융 활성화 추진

- ‘해양금융종합센터’, ‘해운보증기구’ 및 ‘선박운용회사’간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 다양한 복합상품 개발, 민간 금융회사 참여 확대 등 해양.선박금융 활성화 유도

## 실천계획⑧ 상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대응

	상반기	하반기	'16년	임기내
상시·선제적 구조조정	대기업그룹(4월) 취약업종 자금사정 모니터링(상시)	대기업(4~6월) 중소기업(7~10월) 취약업종 자금사정 모니터링(상시)	기업부실화방지 취약업종 자금사정 모니터링(상시)	기업부실화방지 취약업종 자금사정 모니터링(상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시화	기촉법 개정 추진 (국회 협의)	기촉법 개정 추진 (국회 협의)		
주채무계열 평가제도 개선	평가제도 개선(3월)			
선박은행 조성	'15년 상반기매입 대상 선정(4월) 선박인도·용선 개시(6월)	'15년 하반기매입 대상 선정(10월) 선박인도·용선 개시(12월)		
중소기업 구조개선 지원	지원대상기업 선정(수시) 후 지원			
민간자본을 통한 경영정상화 지원	「민간자본을 통한 경영정상화 지원방안」 마련(6월)			
기업정상화 촉진펀드 활성화	투자협의체 구성 및 펀드운영 개시	기업정상화 촉진펀드 운영 지속	펀드운영 지속	펀드운영 지속
해운보증기구 출범	해운보증기구 본인가 및 업무개시	선박프로젝트 등 지원 지속	선박프로젝트 등 지원 지속	선박프로젝트 등 지원 지속
해양금융 지원 활성화	선박·해양금융 활성화 지속 추진			

**실천계획⑨**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가** 대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 강화

◆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대응체계 정비

① **(위험점검시스템 재정비)** 대외부문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 요인에 대한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

- 현재 既마련된 관계기관간 ‘거시경제금융회의’ 및 ‘금융상황 점검회의’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추진
- 이를 위해 관계기관 및 시장전문가들과 정보공유를 확대하며 대외부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 강화

② **(대외부문 대응여력 확충)** 美 금리인상 등에 따른 자본 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외환건전성 규제의 탄력적 운용방안 강구

- 국내은행에 대한 외화 스트레스 테스트를 매일 실시하여 충분한 외화자금 보유를 유도

\* 위기발생시 최소 3개월 동안 견딜 수 있는 외화유동성 자체 확보

- 금융회사의 규제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외환유동성 부족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외화유동성 규제체계를 개선

- 외화차입 유인 완화 및 장기차입 유도 확대를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부과체계를 단순화

\* (현재) 은행 → (개선)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나** 국내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

◆ **쏟림현상·상호연계 등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제2금융권 건전성 및 자금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

①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금융부문내 **쏟림현상, 상호연계성 확대** 등과 관련한 **시스템 리스크 발생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저금리 기조 등으로 급증 우려가 있는 **ELS\*·MMF\*\*** 등의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필요시 **투자자보호 및 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

\* ELS잔액(조원) : ('10년말)29.5 → ('12년말)36.0 → ('13년말)47.9 → ('14.9말)49.9

\*\* MMF잔액(조원) : ('10년말)66.9 → ('12년말)63.1 → ('13년말)66.4 → ('14년말)82.4

○ 대외부문 불확실성이 **국내 금융부문으로 파급·확산될 수 있는** 경로에 대해 **점검**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

② **(제2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제2금융권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해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

○ 상호금융조합의 **경영정상화 유도**하고 필요시 **구조조정 적극 추진** 및 강화된 **자산건전성 분류** 이행 **점검·독려**

○ **외국자본 및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업계 진출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③ **(자금시장 양극화 완화)** **취약업종·비우량 기업**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

○ 전반적인 **회사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장안정 P-CBO 운영기한 연장(15년까지)**

## 다 금융인프라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 ◆ 글로벌 수준으로 금융인프라를 정비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국제 신뢰도 및 안정성 제고

#### ① (국제규범의 국내도입) 바젤Ⅲ 등 국제규범의 국내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및 관련 제도 정비

- 바젤위원회 유동성 규제(LCR) 시행\*('15년)에 따른 모니터링 강화 및 D-SIB 도입('16년)을 위한 세부방안\*\* 확정

\* '15년 80%(일반은행) 기준으로 도입, '19년까지 매년 5%p씩 규제비율 상향  
 \*\* 선정기준, 추가 자본규제 및 정리회생계획 등 방안 검토

- 보험사의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시범운영 및 보험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18년)에 따른 사전준비 강화

\* ORSA(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위험 관리 체계와 현재·미래 지급여력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그림자금융(MMF, 증권화 등)에 관한 정책권고안 이행평가 대응

#### ②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국제적으로 TR 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TR의 국내 도입방안 마련

\* TR(Trade Registry): 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실시간 취합·감독**하기 위한 기구

\*\* CPSS-IOSCO는 최근 TR에 보고할 정보의 목적, 내용, 집계, 전달 등에 대한 보고서 발표('14.9월), 미('14.10월)·EU('14.2월) 既 시행

- TR 담당기관은 TR 도입목적, 정보의 특수성, 취합된 정보 활용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③ (전자증권법 제정) 증권의 전자 발행 및 유통으로 비용절감 및 거래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자증권법 제정 추진

\* 美, 英, 日뿐만아니라, 中도 1993년 전자증권제도 도입

## 실천계획⑨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상반기	하반기	'16년	임기내
위험점검시스템 재정비	위험점검시스템 분석	위험점검 상설협의체 운영 추진	위험점검시스템 운영 지속	위험점검시스템 운영 지속
대외부문 대응여력 확충	외화스트레스 테스트	외화스트레스 테스트	외환건전성 대응여력 확보	외환건전성 대응여력 확보
	외화유동성 규제체계 점검개선	외화유동성 규제체계 점검개선		
	외화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외화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감독강화	거시건전성 모니터링 지속	거시건전성 모니터링 지속	거시건전성 모니터링 지속	거시건전성 모니터링 지속
제2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	대부업체 진출 영향분석	제2금융권 리스크 지속 점검	제2금융권 리스크 지속 점검	제2금융권 리스크 지속 점검
자금시장 양극화 완화		P-CBO 점검		
국제규범 국내도입	LCR 시행	D-SIB 도입방안 마련		
거래정보저장소 도입	도입방안 마련	관련 법령 개정	거래정보저장소 운영	거래정보저장소 운영
전자증권법 제정	관계부처 TF구성	전자증권법 제정안 발의	전자증권제도 도입 준비	전자증권제도 시행



## IV. 금융 규제개혁 현황과 성과

1. 규제개혁 실적과 성과
2. 1, 2차 규제장관회의 후속조치 추진현황
3. 규제기요틴 조치현황
4. 규제신문고 접수 및 조치현황
5.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차질없는 개선

## 1. 규제개혁 실적과 성과

### 가 규제개혁 추진경과

- **(추진배경)** 박근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금융업 등 유망서비스업 육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규제개혁을 해법**으로 제시
  - \* 규제 원점에서 재검토, 규제폐지 및 네거티브 전환(2.25, 3개년 계획 담화문) 금융분야 숨은규제가 많은 분야, 혁파 필요(3.20, 규제개혁장관회의)
  - 금융위는 **현장 중심**으로 법령 뿐만 아니라 숨은 규제를 개혁, 경제와 금융의 새로운 기회와 성장동력 창출을 적극 뒷받침
- **(기본방향)**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 시스템 구축
  - 건전성,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는 유지·강화, 준수비용 절감, 진입·영업활동은 폐지·개선 및 네거티브로 전환
    - 실천과제로서 ①금융의 실물지원 강화·국민불편 해소, ②자율·경쟁을 통한 금융의 새로운 기회 창출, ③숨은규제\* 개선 추진
    - \* 금융은 숨은규제가 많음. 숨은규제 개혁없이 반쪽짜리, 금융유관기관 등 소비자가 규제로 느끼는 사각지대 개혁 필요(대통령말씀, 규제개혁장관회의)
- **(추진노력)** 기관장의 강력한 추진의지 하에 현장 중심으로 규제개선과제 1,659건을 발굴하고 그 중 703건에 대한 개선 추진
  - 기관장의 12차례에 이르는 현장 간담회, 22개 금융유관기관 “규제심의 TF 운영” 등(’14.3~6월)을 통해 규제개선과제를 현장 중심으로 총 1,659건의 과제를 발굴
  - 1,659건 과제 검토 및 수용과제 703건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 수립 후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7.10.)
    - ➔ 1,659건 과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건별로 모두 공개(7.25)

**참 고**      **현장중심의 핵심규제 발굴·반영 노력**

□ **현장중심의 핵심규제 발굴·반영 노력**

- 22개 금융유관기관별로 외부전문가(금융회사 등 피규제자 포함)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규제심의 TF\*”를 구성·운영(3~6월)

\* (구성) 전체TF위원: 155명(평균 : 7명), 외부전문가 : 102명(평균 : 5명)  
(역할) 각 기관이 마련한 규제목록, 민원분석, 개선방안 등을 검토·심의

- 금융위원장, 12차례 “금융현장 규제찾기” 릴레이 간담회 실시

- ① 창업·벤처기업(4.10, D.Camp), ② 장애인 및 학부모(4.17, 서울 경운학교),
- ③ 은행 등 준법감시인(4.30, 은행연합회), ④ 국내 외국계금융사(5.8, 금투협회)
- ⑤ 금별심위원 및 금융권 연구기관장(5.15, 은행연합회) ⑥ 금융투자업(5.19, 금투협회)
- ⑦ 보험업(5.20, 금융위원회), ⑧ 부동산금융(5.21, 은행연합회)
- ⑨ 여전업·저축은행업·신협(5.22, 여전협회), ⑩ 금융사 해외진출(5.27, 금융연구원)
- ⑪ 중소기업수출입기업(5.28, 중소기업중앙회), ⑫ PEF.헤지펀드.프라이브로커(5.29, 금투협회)

< 현장의견 핵심규제 반영(사례) >

현장 의견		정책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증권 계열사간 창구 분리로 종합서비스 곤란</li> <li>▪ 현행 영업점 공동사용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li> </ul>	<b>금융업권 간담회 (3.13)</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증권간 복합점포에서의 계열사간 물리적 사무공간 구분 자율화</li> <li>▪ 계열사간 고객 동의에 기초한 정보 공유 간소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 대출시 우수한 기술기업에도 담보, 보증 요구</li> <li>▪ 마이스터고 재학생을 청년 창업기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li> <li>▪ 예비창업자를 최하등급으로 평가해 특례보증대상에서 탈락</li> </ul>	<b>창업벤처기업 간담회 (4.1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창업특례보증의 창업 대표자 연령제한 완화(만 20세→만 17세)</li> <li>▪ 아이디어와 사업계획만 있는 예비창업자 특성에 맞는 기술평가모형을 새로 개발 적용(기술금융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가 겸영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중복절차 필요</li> <li>* M은행이 파생상품 매매·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 자본법상 인가, 은행법상 신고가 모두 필요해 업무추진 지연, 비용 추가 발생</li> </ul>	<b>보험업계 간담회 (5.2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수·겸영업무 신고절차 간소화</li> <li>▪ 신규업무 추가 허용</li> <li>* 보험사 지수형 날씨보험 취급 허용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탁중앙회의 주식운용 상한은 예탁금 자산의 10%임에도 8% 이내로 유지하도록 행정지도</li> </ul>	<b>행정지도 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법령보다 더 강하게 지도한 이후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지된 “남은” 행정지도 폐지</li> </ul>

## 나 규제개혁 주요 실적

### ① (명시적 규제 개선) 등록규제 127건 폐지·완화(전체대비 14.0%)

- 창업지원 제약 해소, 자산운용 영업규제 개선, 기업 상장 활성화, 진입규제 네거티브 전환, 금융업 해외진출 지원 등

### ② (비명시적 규제 개선) 숨은 규제 총 680건 중 약 95% 일괄정비

- 총 680건 중 291건(42.8%)을 폐지하고 359건(52.8%)은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개선

< 2014년 금융위 규제개혁 주요 실적 >

명시적 규제 폐지·완화	비명시적 규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규제] 폐지·완화: 127건 (감축대상 규제 대비 14.0%)</li> <li>■ [미등록규제] 폐지·완화 : 37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공식 행정지도 약 95%를 폐지·자율운영 (291건 (42.8%) 폐지, 359건(52.8%)은 업권에서 자율 운영으로 전환)</li> </ul>

↑	→	↑								
<table border="1"> <tr> <th>검토 규제</th> </tr> <tr> <td>3,100건 (법령규제+숨은규제)</td> </tr> </table>	검토 규제	3,100건 (법령규제+숨은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장 12차례 현장간담회</li> <li>■ TF구성 서베이</li> </ul>	<table border="1"> <tr> <th>발굴과제</th> </tr> <tr> <td>1,769건</td> </tr> </table>	발굴과제	1,769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69건 건별 검토의견 작성 및 공개</li> </ul>	<table border="1"> <tr> <th>개선 과제</th> </tr> <tr> <td>703건</td> </tr> </table>	개선 과제	703건
검토 규제										
3,100건 (법령규제+숨은규제)										
발굴과제										
1,769건										
개선 과제										
703건										

### [ 2014년 금융위원회 규제개혁에 대한 외부 평가 ]

<b>언론</b>	<p>“법령, 숨은 규제를 총망라한 종합개혁방안”이라는 공통된 평가와 함께, 현장행보시 강조했던 “금융업 외연확장 주력”,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결과에 대해서도 긍정적 논조</p> <p>※ 신문·방송 등 총 921건 기사화(3.1.~8.30.) 한국경제(1면 TOP), 조선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 1면 노출 경제지의 경우 2, 3개면 전체를 할애해 주제별로 심층보도</p>
<b>업계</b>	<p>칸막이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활성화에 기대감을 나타내는 반응이 대부분. 이는 업권별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갈등이슈를 선제적으로 조율한 성과</p> <p>※ “증권사, 수익개선에 긍정적”(7.10., 연합) 금융투자업계, 규제완화 IB, 운용업 확대 계기될 것” 환영(머니투데이 등) 은행 “복합점포, 유니버설뱅킹 기대 커”(이데일리 등)</p>
<b>전문가</b>	<p>새로운 금융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통해 금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개혁방향성을 적극 지지하면서, 규제개혁방안이 금융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p> <p>※ [금융연구원] “각종 규제에 묶여있는 금융산업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조치” [신한금융지주]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행의지를 분명히 한데 긍정적” [KB경영연구소] “영업현장에서 대고객 금융서비스의 질적향상을 가져올 것”</p>

**참 고**      **주요 핵심규제 개선 내용**

과제명	개선실적	주요성과
창업관련 규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li> <li>* 연령요건 완화(20→17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성화 고교생 및 R&amp;D 벤처 등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li> </ul>
주택연금 공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연금 가입기준 합리화</li> <li>* 일시적 2주택자 및 다주택자 연금이용대상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연금의 수요증가에 맞춘 노인 생활안정에 기여</li> </ul>
금융현장의 숨은 규제 발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숨은규제 발굴을 위해 22개 관계기관을 통해 숨은 규제 목록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숨은규제 위주로 발굴·개선 하여 규제개선 체감도 극대화</li> </ul>
복합점포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 가능 면적을 확대하고, 소유 부동산 개량 개발을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의 자율적 자산운용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li> </ul>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상거래에서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li> <li>-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이외에 대체인증수단 제공(SMS, ARS)</li> <li>- ID/PW기반의 간편결제 선택시 추가인증없이 결제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주도의 다양한 인증 및 결제방법 적용이 가능</li> <li>- 외국인의 국내 온라인쇼핑몰 이용이 간편해져 무역역조 해소 및 온라인쇼핑시장 확대</li> </ul>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 비율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mp;A 제약 완화 등을 위해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개선</li> <li>*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완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사의 위험투자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모험자본 공급 촉진</li> </ul>
파생상품시장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운영의 자율성 확대</li> <li>*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 규정 개정</li> <li>- 전문투자자 참여 확대 유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자율성 확대 및 신시장 개설 등을 통해 투자상품 다양화 및 효율적 위험관리</li> </ul>

## 다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 ①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지정·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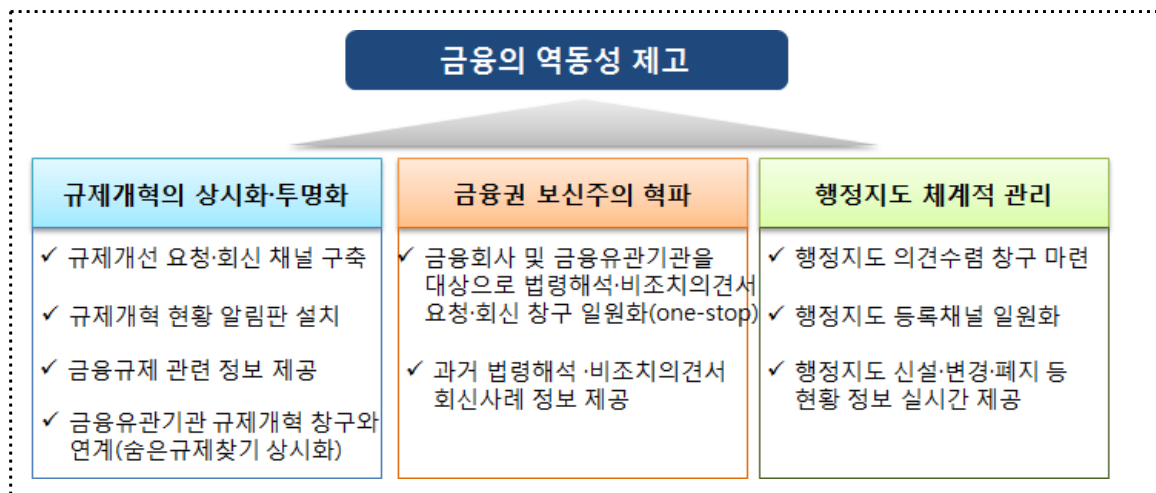
- 정기적으로 4~6월 현장중심 간담회·서베이 등을 통해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7~8월 실무검토 후 9월에 일괄 정비
  - 기존 규제개혁 완료과제에 대한 현장반응 점검 및 과거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수용되지 않은 건에 대한 재검토 병행
- `15년에는 2단계 금융규제개혁을 금융혁신위원회 중심으로 추진
  - 금융구조 개혁을 통해 금융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

### ② 금융규제민원포털 구축

- 규제개혁 상시화·투명성 제고, 금융권 보신주의 혁파, 행정 지도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해 금융규제민원포털을 구축

\* `15.2월까지 개발완료, 3월부터 서비스 개시 예정

#### < 금융규제민원포털의 주요 기능 >



### ③ 규제비용총량 관리

- 금융규제에 부합하는 규제비용분석 매뉴얼 마련 및 기존 규제에 대한 비용분석 실시

## 2. 1·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 추진현황

- 규제개혁장관회의 현장건의 과제는 총 12건(1차 9건, 2차 3건)
- (1차) 총 9건 중 8건은 정부조치 완료, 1건\*은 방안마련 중
    - \* “개인자산 종합관리계좌 도입여부 검토”(기재부 주관, 금융위 협업)
  - (2차) 총 3건 중 1건은 정부조치 완료, 2건은 관계부처 합동 TF (민관합동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TF)에서 진행 중
    - \* 국내온라인쇼핑몰 외국인 구매 활성화, 스마트폰 활용 금융 활성화

### < 1,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금융위 과제 내역 >

구분	과제명	주요 내용	현황	비고
1차	유한회사의 감사·공시 의무 강화 반대	일정규모 이하의 유한회사는 외부 감사 및 공시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국회심의	주관
	국내보험사 외국인환자 유치허용	국내보험사가 외국인환자도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	국회심의	협업
	개인자산 종합관리계좌 도입여부 검토	현행 과세체계내 수용가능성, 기존 세제지원 상품정비, 외국제도 등에 대한 추가검토 필요	방안마련	협업
	퇴직연금 규제 개선	기금형 제도도입 등 퇴직연금자산 운용방식 개선 추진	완료	주관
	자산운용수수료의 합리적 개선	국내 위탁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기관투자자의 자산운용 수수료가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역량에 걸맞게 책정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완료	주관
	재창업 기업대표자 신용정보조회 한시적면제	우수 재기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해제를 위한 관리규약 개정	완료	주관
	연대보증 면제 민간 확대	기은·산은 등 정책금융기관부터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이후 시중은행으로 확산	완료	주관
	전자금융거래제도 개선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완료	주관
	PEF 관련 규제개선	다양한 투자구조 허용, 자산운용 규제완화등 PEF 규제 합리화	완료	주관
2차	국내온라인 쇼핑몰 외국인 구매 활성화	온라인쇼핑몰 이용 전반의 규제 개선사항과 불편사항 해소 추진	TF운영중	협업
	글로벌 수준의 간편결제 서비스 환경 마련	보안성·재무적 능력을 갖춘 결제 대행업체는 카드정보를 수집·저장할 수 있도록 개선	완료	주관
	스마트폰 활용 금융 활성화	스마트폰으로 간편결제 및 금융 거래가 가능한 환경 구축	TF운영중	협업

### 3. 규제기요틴 조치현황

□ 금융위 소관 규제기요틴 과제 8건은 전부수용(4건), 부분수용(1건), 대안마련(3건)하여 제도개선(예정)

< 금융위 소관 과제 검토내용 : 8건 >

건의내용	검토내용	답변
IT기업의 금융업 진출 막는 진입규제 완화	- 전자금융업 진출 위한 자본금 액수 완화 - 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한도·이용 한도 확대	수용
주류도매업 신용보증서 발급제도 개선(신용보증기금)	- 주류도매업에 대한 “보증취급 유의 업종” 지정 해제	수용
면책채권 보증 차별 해소	- 면책된 경우 보증기관에서 일반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주금공, 신·기보)	수용
투자회사형 부동산펀드 부동산 투자제한(70%) 폐지	- 부동산펀드와 리츠의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부동산펀드 투자상한 상향조정	수용
공시제도 개선 건의 -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시 계약진행사항 정기 공시 폐지 - 모회사 공시시 종속회사에 대한 공시 완화	-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은 투자자 정보제공 범위내에서 공시부담 최소화 -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부담은 완화 하고 관련 규정은 명확히 개정	부분 수용
주채무계열 및 감사인 지정관련 채무평가 방식 개선 - 부채비율 위주 평가방식에서 기업별·산업별 특성 반영	- 부채비율이 높은 주력사업(해운·조선· 항공)의 특수성 감안하여 가점 조정	대안 마련
펀드내 시총비중 10%이상 종목편입제한 완화	- 투자자보호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장성 있는 주식의 시총비중 이상 편입 허용	대안 마련
공인인증기관의 등록 및 인증 방법 평가관련 규제완화 - 인증평가 신청기준 완화	- 필요성이 줄어든 현행 인증방법평가 위원회를 폐지하고, 해당기능 민간 기관 이관	대안 마련



## 4. 규제신문고 접수 및 조치현황

### 가. 접수 및 대응 현황

□ 규제개혁장관회의(3.20일) 이후 총 316건이 접수(중복 건 제외시 205건)

○ 답변 완료 된 311건 중 75건(24.1%)\*는 필요성이 인정되어 수용

\* 이 중 26건은 감독규정 개정, 규제방식 변경 등 후속조치 필요(조치 중)

○ 나머지는 형평성 문제, 건전성 문제 야기 등의 사유로 불수용

\* 불수용 건에 대해서는 불수용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추가로 가능한 조치 등을 안내

접수	답변완료	수용	후속조치필요	불수용 (중장기검토)
316건	311건	75건(24.1%)	26건	236건

### 나. 대표적 수용, 불수용 사례

제안내용	수용여부	검토결과
회생절차 종결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수용	실패한 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기술력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재기 지원을 보다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코스닥시장 불성실 공시 관리종목 지정 기준 개선	수용	최대한 신속히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의 개정 완료
여신금융회사의 부수업무 규제 방식 개선	수용	여신금융회사의 부수업무 규제 방식을 Negative 방식으로 변경
자동차를 운행할 때에 한하여 보험가입	불수용	무보험 상태로 운행할 가능성이 높아져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음
오래된 채무에 대해 추심중단	불수용	채권의 회수는 채권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이므로, 오래된 채권이라 하여 채권행사 자체를 제한하기는 어려움

### 다. 향후 계획

□ 수용이 불가능한 사안이라도 건의자가 만족할 수 있는 창의적 대안을 발굴하는 등 해결방안 적극 강구

○ 특히, 수요자 중심으로 답변이 이뤄지도록 우수 사례 전파

## 5. ‘비정상적 정상화 과제’의 차질없는 개선

### 가 소관 ‘비정상적 정상화 과제’ 현황

□ 금융위원회 소관 ‘비정상적 정상화 과제’는 총 10개

- 보험사기·범죄,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사기범죄, 꺾기 등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대부분
- 25개로 세부과제로 나누어 관리 중, 완료 22개, 부분완료 3개

#### < 금융위 소관 과제 목록 >

과제명	세부과제	완료여부
1. 보험사기·범죄 근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완료
	보험업법,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등 제·개정	부분완료
2. 보이스피싱, 파밍 등을 통한 금융사기 근절	스미싱 등 대응 시스템 구축	완료
	신 입금계좌 지정제 시행	완료
	해킹이용계좌 지급정지	완료
3.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범죄 방지	대포통장 의심거래자에 대한 예금계좌개설 절차 강화	완료
	대포통장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추진	완료
	대포통장 의심거래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완료
	대포통장 과다발생 금융사 현장점검 등 실시	부분완료
	대출빙자사기 피해금환급 원활화를 위한 시스템 정비	완료
4. 은행 꺾기 관행 개선	은행의 꺾기관행 근절을 위한 규제체계 개선	완료
5.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관행 개선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관행 개선 방안 마련	완료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	완료
	금융회사가 유체동산 압류시 취약계층 보호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	완료
6. 보금자리론의 화재보험 의무가입 관행 개선	다세대주택 보유자의 보금자리론 이용시 화재보험 의무가입 폐지	완료
7. 신용보증기금의 과도한 채권보전조치 관행 개선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 업무처리기준” 개정	완료
	가격자문제 도입 및 시행	완료
8. 장애인 카드 발급시 장애유형에 맞는 본인확인 방안 마련	회사별 현황파악	완료
	대고객 고지강화	완료
	이행여부 점검	완료
9. 여신거래시 만기연장 가능여부 사전통지	대출만기연장가능 통보 현황 조사	완료
	관행개선방안 마련	완료
10. 퇴직연금시장의 불공정경쟁 관행개선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상품 위주 운용관행 개선	완료
	특정사업자 간의 원리금 보장상품 집중교환 관행 개선	부분완료
	제공금리 차별 및 부당한 수수료 요구관행 개선	완료

\* 10개 과제 외 창조경제 활성화, 규제철폐를 위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과제인 기술신용평가, 간편결제 활성화를 정상화과제로 추가 발굴하여 자체 추진 중

## 나 주요 과제 성과 및 향후 기대효과

### □ 주요과제 성과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근절)** 기술형 금융사기인 스미싱, 메모리 해킹은 시도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대책 추진 이후 크게 감소
  - 피싱.파밍 사이트 사전 차단, 스미싱 문자 분석 및 차단 시스템 구축 등으로 발생건수 대비 피해 발생율\*도 감소
- \* 발생건수 대비 피해 발생율(%)  
스미싱 : ('13) 92.8 → ('14.상) 37.7 / 파밍 : ('13) 22.1 → ('14.상) 15.5
- **(보험사기 적발률 증가)**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2014년 상반기 2,869억원으로 전년 동기(2,579억원) 대비 11.2% 증가
- **(은행꺾기 근절방안 시행)** 관련 법령(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시행으로 꺾기 관행 개선 및 중소기업 금융부담 경감
-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율 감소)** 카드사(전업카드 9사, 겸영은행 11사)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율 전년도 대비 17%p 감소
- **(보금자리론 화재보험 의무가입 제도개선)** 보금자리론 이용 다세대주택 보유자의 대출자의 보험료부담 완화('14.10월까지 380건, 46백여만원)
- **(신보 과도한 채권보전조치 제도개선)** 관련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신보의 과도한 채권보전조치 감소

### □ 기대효과

- **(사회안정)** 전자통신금융사기, 보험사기 등 금융범죄 근절로 국민들의 물질·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사회안정 기여
-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꺾기·과도한 채권보전조치·장애인 금융차별·퇴직연금시장의 불공정 경쟁 개선 등으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제고

**참 고** '비정상외 정상화 과제' 개선실적 및 주요성과

과제명	개선실적	주요성과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을 통한 금융사기 근절	- '신·변종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13.12월) 및 보완대책(14.8월) 발표	- 스미싱 월평균 피해건수 80% 감소 - 발생건수 대비 피해발생을 감소 * (스미싱) (13년) 92.8→(14상)37.7% (파밍) (13년) 22.1→(14상)15.5
보험사기·범죄 근절	- '보험사기 근절대책' 마련(14.7월) - 보험사기 적발실적 제고(기획조사)	- 보험사기 적발실적 증가 * (13상) 2,579억원→(14상) 2,869억원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범죄 방지	- 대포통장 발급 비중 높은 금융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등	- 신규 대포통장 개설 감소
은행 꺾기 관행 개선	- 꺾기 근절방안을 마련·시행 (14.2월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 꺾기 관행 개선으로 중소기업 금융부담 감소
취약계층 채무자 유체동산압류 개선	- 유체 동산 압류 가이드라인 마련 및 주기적 점검	- 취약계층 부동산 압류를 감소 * (12.10~13.2월)20%→(14.1~6월)3%
보금자리론 화재보험 의무가입 개선	- 다세대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화재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규 개정	- 다세대주택 보유자 대출비용 절감 * 연간 약 4,600만원 절감
신보외 과도한 채권보전조치 개선	-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 업무 처리기준, 가격자문제 시행	- 채권보전조치 업체수 비율 감소 * (11~13년) 56.1%→(14.9월말) 55.0%
장애인카드 발급시 장애유형에 맞는 본인확인방안 마련	- 전업계 카드사(8개) 장애 유형별 본인확인 방법 마련	- 장애유형별 장애인들의 카드 발급 편의성 제고
여신거래시 만기연장여부 사전통지	- 대출만기 연장가능 통보 현황 조사 -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만기연장 가능여부를 사전 통지하여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퇴직연금시장의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 퇴직연금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	- 자사상품 위주 운용관행 개선 - 특정 사업자 간의 원리금보장 상품 집중교환 관행 개선
기술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 기술정보 DB(TDB) 구축 - 기술신용평가기관(TCB)도입	- 기술신용평가 대출이 빠르게 확산* * 4개월(7~10월)만에 3.6조원 공급
간편결제 활성화	-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 Active X 이용환경 개선	-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를 통해 소비자불편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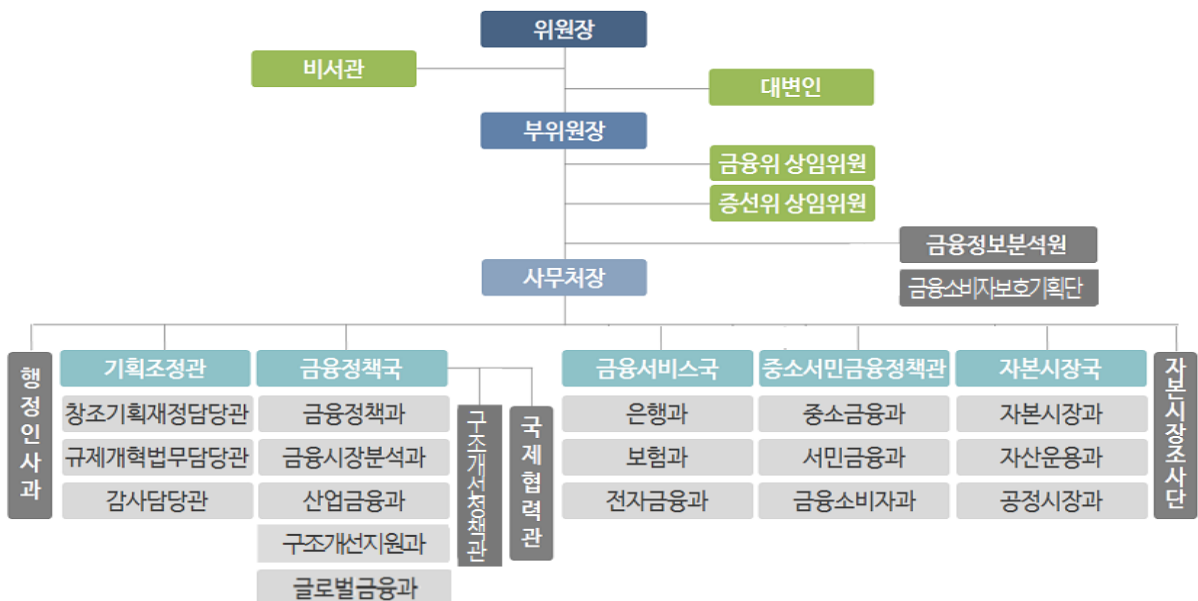
## V. 금융위원회 일반 현황

1. 기구 및 조직
2. 부서별 주요기능
3. 정원 및 현원
4. 2015년 예산 및 기금 현황
5. 소관 법률 현황
6. 산하 공공기관 현황

# 1 기구 및 조직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당연직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
    - \* 당연직 :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관 3국 1대변인 2정책관 19과로 사무처를 구성
-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에 설치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기준.감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겸임),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
-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규제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등 조직현황 >



## 2 부서별 주요기능

구분	주요 기능
기획조정관	·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 국회 관계 업무 및 예산 편성·집행의 총괄 · 금융규제개혁업무 총괄 · 내·외부 감사 및 비상계획업무 총괄
행정인사과	· 내·외부 인사 및 조직 관리 ·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금융정책국	· 금융정책의 수립 및 감독업무 총괄 · 금융시장 안정 확보 및 동향 분석 · 중소기업금융정책 및 예금보호정책 수립 · 외국환 건전성 감독 및 외국 금융당국과의 협력 · 창조금융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창조금융 지원 · 금융중심지 조성 및 금융전문인력 양성 정책 수립 및 시행
구조개선정책관	·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의 수립·집행 · 공적자금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입안·기획 · 예금자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금융서비스국	· 은행업 및 보험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은행업 및 보험업 감독·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 전자금융거래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책 수립
중소서민금융정책관	· 중소기업 활성화 및 건전성 제고 관련 정책 · 서민금융정책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정책 · 금융소비자정책 및 제도에 관한 기획·총괄
자본시장국	· 자본시장정책 수립 및 총괄 · 자산운용 관련 정책 총괄 ·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 및 공인회계사 정책 총괄
자본시장조사단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총괄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분석·분류 · 국내외 불공정거래 조사기관간 협력
대변인	·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정리
금융정보분석원	· 자금세탁방지제도 정책 총괄 및 검사·감독 제도 운영 ·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및 제공 ·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력

## 3 정원 및 현원

□ 정원 : 252명, 현원 : 278명 (‘14.12월 현재)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계
정원 합계	2	239	3	8	252
(현원 합계)	(2)	(265)	(3)	(8)	(278)
본부	2	188	3	-	193
금융정보분석원	-	51	-	8	59

## 4 2015년 예산 및 기금 현황

□ '15년 소관 예산 : 1조 2,203억원 ('14년 대비 9.1%)

○ '15년 금융위원회 운영예산은 2,203억원 ('14년 대비 86.2%)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예산(A)	2015예산(B)	증감액(B-A)	증감율(%)
<b>일반 회계(I+II)</b>	<b>1,118,270</b>	<b>1,220,317</b>	<b>102,047</b>	<b>9.1</b>
I. 금융위원회 운영	118,270	220,317	102,047	86.2
○ 인 건 비	18,881	20,631	1,750	9.3
○ 기 본 경 비	7,009	7,067	58	0.8
○ 사 업 비	92,380	192,619	100,239	108.5
II. 내부 거래	1,000,000	1,000,000	-	-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1,000,000	1,000,000	-	-

\* 주요 신규사업 : FATF의장국 수입(6.2억원), 산업은행·수출입은행출자(해운보증기구설립)(500억원),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출자(설비투자펀드, 안전투자펀드)(800억원)

□ 기금 : 신용보증기금 557억원 등 금융위 소관 7개 기금 운용 계획은 총 3조 5,661억원

(단위 : 백만원)

기금명	2014년(수정) (A)	2015년 (B)	증감	
			B-A	%
공적자금상환기금	8,972,929	3,260,040	△5,712,889	△63.7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99,863	101,443	1,580	1.6
신용보증기금	62,269	55,742	△6,527	△10.5
기술신용보증기금	27,749	24,998	△2,751	△9.9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6,860	15,134	△1,726	△10.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33,978	40,339	6,361	18.7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71,654	68,354	△3,300	△4.6
구조조정기금	2,556,180	-	순감	순감
합 계	11,841,482	3,566,050	△8,285,432	△70.0

\* 구조조정기금은 '14.12월 운용기한 종료



## 5 소관 법률 현황

## □ 금융위원회 소관법률은 총 41개

구분	법률
금융정책 관련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기업금융 관련 (5)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구조개선 관련 (6)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글로벌금융 관련 (1)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은행 관련 (5)	은행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보험 관련 (2)	보험업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 관련 (2)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중소서민금융 관련 (6)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자본시장 관련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사채등록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법, 담보부사채신탁법,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회계 관련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금융정보분석원 (2)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계 (41)	

6 산하 공공기관 현황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 10개 기관

-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담보력 부족기업.기술기업 등의 신용보강을 위한 보증지원
-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제도 운용, 금융회사 부실자산정리 등을 통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지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의 유동화, 전세자금 대출보증, 주택연금보증 등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 촉진
-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매매.결제, 상장법인 공시 등을 통해 자본시장 발전기반 조성
- (코스콤) 국내외 증권선물시장의 전산업무 및 IT인프라 개발.운용
- (한국산업은행) 성장동력산업 확충, 시장안전판 역할 수행 등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 자금공급 전문역할 수행

② 기타 산하공공기관 : 1개 기관

- (금융감독원)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 검사.감독업무 수행

[참고] 공공기관 지정요건

분류		지정요건	금융위 소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공기관	공기업	자체수입 50% 이상 직원 50인 이상	0
	준정부기관	자체수입 50% 미만 직원 50인 이상	7
	기 타 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공기관	3
기타 산하공공기관		-	1

[참고] 금융위 소관 공공기관 주요현황

기관명		기관장 (임기)	설립근거	조직 및 인원	총자산* (억원)	'15예산 (억원)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공기관	신용보증기금	서근우 (`13.10.1~ `16.9.30)	신용보증기금법	13부 4실 (2,143명)	78,932	62,269
	기술신용보증기금	김한철 (`14.1.14~ `17.1.13)	기술보증기금법	10부 2실 (1,104명)	33,523	27,750
	예금보험공사	김주현 (`12.5.27~ `15.5.26)	예금자보호법	13부 5실 2국 (653명)	260,227	1,070
	한국주택금융공사	김재천 (`14.10.29~ `17.10.28)	주택금융공사법	4본부 1처, 3실 13부 1연구소 (513명)	547,720 (`14.11말)	1,493
	한국자산관리공사	홍영만 (`13.11.18~ `16.11.17)	자산관리공사법	5본부 27부 (1,120명)	31,010	4,042
	한국거래소	최경수 (`13.10.1~ `16.9.30)	자본시장법	5본부 32부 (755명)	39,901	2,955
	한국예탁결제원	유재훈 (`13.11.28~ `16.11.27)	자본시장법	6본부 23부 2지원 (466명)	27,611	1,643
	코스콤	정연대 (`14.5.8~ `17.3월)	상법	5본부 23부 1소 (693명)	4,262	3,283
	한국산업은행	홍기택 (`13.4.15~ `16.4.8)	한국산업은행법	11부문 7본부 55부·실 (3,318명)	2,136,392 (`14말 추정)	8,338 (`14말 추정)
	중소기업은행	권선주 (`13.12.28~ `16.12.27)	중소기업은행법	14본부 1연구소 2센터 48부서 (8,165명)	2,274,721	23,491
기타 산하공공 기관	금융감독원	진웅섭 (`14.11.19~ `17.11.1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처 40국 17실 1센터 (1,900명)	- (무자본 특수법인)	3,069

\* 고유계정 + 특별계정

첨부1. 금융위원회 소관  
브랜드과제·국정과제 추진현황 점검

## 1. 브랜드과제 추진현황

◆ 금융위 브랜드과제로 “27. 금융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세부과제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을 선정·추진

### ① 기술금융 현장확산

- 기술신용평가기관(TCB)\*·기술정보 DB(TDB)\*\* 등 기술신용 평가 인프라 확충으로 중소기업 대상 기술금융 공급 확대
  - \* TCB 운영 :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 \*\* TDB 구축 : 약 987만 건의 기술정보를 은행, 보증기관, TCB 등에 제공
- 기술금융 공급실적은 `14년말 현재 1만 4,413건, 8.9조원(잔액 기준)으로 대출한도 증가\* 및 금리 인하\*\* 효과가 뚜렷
  - \* (기존중기대출) 205백만원 → (기술신용대출) 587백만원
  - \*\* (기존중기대출) 4.31% → (기술신용대출) 3.98%

### ② 모험자본시장 육성

- 성장단계별 투자금융 공급을 통한 건강한 기업성장생태계 육성을 위해 성장사다리 펀드\* 조성
  - \* 성장사다리펀드조성 2.6조원, 투자집행 규모 4,740억원(`14년말 기준)
- 코넥스 시장 개설 이후 3배 이상 급성장하여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초기 자본시장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
  - \* 상장기업 수(개) : (`13.7) 21 → (`13.12) 45 → (`14.12) 79
  - \*\* 시가총액(억원) : (`13.7) 4,689 → (`13.12) 9,234 → (`14.12) 14,252

### ③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

- 금융업 내 보신주의를 조장하는 과도한 검사.제재관행 개혁\* (11.4,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개정)
  - \* 직원제재 90%감축, 관행적 종합검사 50%축소, 제재시효도입, 고의.중과실 없는 부실은 면책 등
- 은행권의 낡은 자금중개 행태를 바꾸기 위해 “은행 혁신성 평가” 도입
- 현장점검·실천을 위해 금융위원장 기술금융 등 현장방문 총 19회 실시(12월말)

## 2. 국정과제 추진현황

### ① (과제현황) 금융위 주관 국정과제는 4개(세부과제 13개)

번호	국정과제명	세부과제명
1	가능성에 투자하는 금융환경 조성	자본시장제도 선진화
		벤처창업 투자확대 및 중간회수시장 확충
		M&A 활성화
28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상호금융 감독체계 정비
		유사보험 규제개선
		개별법상 펀드규제 개선
		우체국 예금 등 민간금융회사 간 공정경쟁 기반구축
30	서민 금융부담 완화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서민의 과다채무 및 금융애로 해소 지원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등 지원
38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 대응	가계부채 연착륙
		회사채시장 원활화
		상호금융·저축은행 건전한 발전

○ ‘가능성에 투자하는 금융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업상장 활성화 방안\*’ 및 ‘주식시장 발전방안\*\*’ 등을 발표·추진 중

\* 복잡한 상장절차 합리화, 코스닥시장 “기술평가상장특례제도” 확충 등  
\*\* 연기금,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 증시참여 확대, 공모펀드 활성화 등

- ‘14년 코스피·코스닥 시장 기준 신규상장기업은 전년의 2배 수준인 76개, IPO규모도 4.7조원 내외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 “M&A활성화 방안” 마련·추진에 따라 전체 M&A규모\* 및 중소·중견기업 M&A\*\*도 대폭 증가

\* M&A 거래규모(조원) : (‘12) 37.8 → (‘13) 38.8 → (‘14) 50.2

\*\* 중소·중견기업 M&A 거래규모(조원) : (‘13상) 1.27 → (‘14상) 2.47

○ 세월호 사고 이후 해운공제 운영상 문제점 등이 대두되면서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관련 규제정비 여건 성숙

- 상호금융 중앙회 감독 법적근거 마련 추진 및 공제기관 등이 제공하는 유사보험에 대해 규제개선안을 마련·시행

\* 유사보험 규제개선 만족도 조사 결과 75.8%가 긍정적 평가

- ‘서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학자금 연체채무 경감\*\* 등은 차질없이 진행

\* 채무조정 약정 체결 : 14.12월 기준 34.1만명(출범 당시 목표 5년간 32.6만명을 초과달성)

\*\* 약 5.9만명 연체채권(원금 3,031억원) 매입, 이중 2.5만명 채무 감면 (평균감면을 43%)

-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가계부채, 회사채시장,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우리금융의 위험요인 지속 모니터링 중

- 가계부채 연착륙\* 및 구조개선의 지속적 추진으로 가계부채가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위험이 점차 완화

\* 고정금리 비중(%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기준) : (10말)0.5 → (14말)23.6  
비거치식분할상환 비중(% ) : (10말)6.4 → (14말)26.5

② (입법현황) ‘14년 금융위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총 10개 개정 필요 법안을 모두 既발의하여, 5개 법안 개정 완료

\* `14년말 현재 소위 4개 법안 계류 중, 나머지 1개 법안도 既제출

법률명	국정과제 내용	진행현황
자본시장법(4)	투자은행 활성화, 투자자보호 강화 등	완료
	클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소위 계류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제도 도입	완료
	M&A 활성화 등	소위 계류
금융지주회사법	금산분리 강화 등	완료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감사업무의 품질관리제도 강화 등	소위 계류
상호저축은행법	대주주에 대한 검사·제재 강화 등	완료
금융위 설치법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	소위 계류
신용협동조합법	금융당국의 중앙회 업무 감독근거 마련	완료
휴면예금관리재단법	서민금융 총괄기구 신설근거 마련	국회 제출

3. 향후 계획

- `15년에도 제2단계 규제개혁, 모험자본 확대, 핀테크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금융업 경쟁력을 강화

\* 지난해 도입한 제도들의 내실화 및 가시적 성과 도출에 중점을 두고 국회 계류중인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

## 첨부 2. 2014년 업무계획 추진현황 점검



## 1 금융사고 방지

실천과제	조치내용 및 일정	이행현황
가.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마련(2월)</li> <li>정보보호에 대한 실질적 책임강화방안 마련(12월)</li> <li>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정보보호 관련 법률과의 체계 정비(12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상추진</li> <li>정상추진</li> <li>추진중</li> </ul>
나.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전산 보안전담기구 설립 방안 확정 (9월 / '15.3월 (가칭)금융보안원 출범 예정)</li> <li>전자금융사기 방지대책 마련(8·12월)</li> <li>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마련(7·9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상추진</li> <li>정상추진</li> <li>정상추진</li> </ul>
다. 금융부문 비정상의 정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합리한 금융관행 모니터링 관리체계 구축(4월)</li> <li>보험사기 연계 정보인프라 방안 마련(7월)</li> <li>보험사와 계열사간 거래 규제 강화(12월)</li> <li>대부업을 통한 부당계열지원 차단(12월말)</li> <li>대부업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상추진</li> <li>완료</li> <li>정상추진</li> <li>정상추진</li> </ul>

## 2 수요자 중심의 감독체계 구축

실천과제	조치내용 및 일정	이행현황
가.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12월)</li> <li>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 수립(12월)</li> <li>금융교육 지역협의회 설치(12월)</li> <li>신용카드 소비자 보호방안 추진(12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진중</li> <li>완료</li> <li>정상추진</li> <li>정상추진</li> </ul>
나. 금융소비자 인식조사 정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국민서베이 실시(12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상추진</li> </ul>

### 3 서민 금융애로 해소

실천과제	조치내용 및 일정	이행현황
가. 서민금융총괄 기구 설립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7월) .공.사적 채무조정 연계(8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설치(11월)	.정상추진 .정상추진 .정상추진
나. '관계형 금융' 기반 조성	.신용평가시스템 개선(5월) .신협외 개인신용평가시스템 재구축(9월) .관계형 금융 로드맵 마련(6월)	.완료 .완료 .완료
다. 채무조정 지원	.국민행복기금 채무지원 확대(34.1만명) .채무조정지원자에 대한 취업.창업 연계 강화 (1,552명 연계지원)	.정상추진 .정상추진

### 4 가계부채 관리 강화

실천과제	조치내용 및 일정	이행현황
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대출 확대 ('14년 중 18.3조원 공급, 지속) .보금자리론 취급 금융기관 범위 확대 (제2금융권 포함, 6월) .가계부채 구조개선 추진(고정금리 23.6%, 비거치식분할상환 26.5% / '14년말기준)	.정상추진 .정상추진 .정상추진
나. 취약계층 부담 경감 및 잠재위험 관리	.금융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지원 ('136월~'1411월까지 18.7조원, 20.9만명 지원) .바꿔드림론 지원 강화(지원대상인 고금리 대출의 범위 확대, 4월) .자영업자 대출 통계체계 정비(업종별, 담보별 통계 정교화 방안 마련, 12월)	.정상추진 .정상추진 .정상추진

## 5 기업부실 사전 예방

실천과제	조치내용 및 일정	이행현황
가. 상시 기업구조조정 추진	.정기신용위험평가 결과 대기업(C등급 11개), 중소기업(C등급 54개) 워크아웃 추진 .기업구조조정 전담조직 확대개편(8월)	.정상추진  .완료
나. 기업부실 사전관리체계 정착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3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시화 추진(12월) .대기업그룹 사전관리체계 개편(3월)	.완료 .정상추진 .완료
다. 해운보증기구 신설	.해운보증기구 신설(12월)	.완료

## 6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실천과제	조치내용 및 일정	이행현황
가. 잠재 리스크요인 선제적 대응	.국내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 금융 회사 외화유동성 리스크 점검을 강화 .ABCP, AB전단채 등 CP·전단채 시장 모니터링을 실행 중	.정상추진  .정상추진
나. 지급결제제도 개선	.CMS 안전성 강화방안 마련(2월)	.완료
다. 내부통제 강화	.은행 내부통제강화방안 마련(8월) .은행의 여신심사·감리시스템 특별점검(5월)	.완료 .완료
라. 금융인프라의 국제정합성 제고	.금융회사 정리체계 개선방안 검토 .은행의 조건부차본증권 발행근거 마련(7월) .감사인지정제도 확대(11월)	.정상추진 .완료 .완료

## 7 경쟁촉진 환경 조성

실천과제	조치내용 및 일정	이행현황
가. 금융규제 상시 개선	.금융서비스업 발전 민관합동 TF운영(4월)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7월) .금융투자업 인가규제 개선방안 마련(7월)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개선방안 마련(4월)	.완료 .완료 .완료 .완료
나. 경쟁촉진 제도 구축	.은행계좌이동제 도입방안 마련(10월)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12월) .새마을금고 유사보험 상품의 규제합리화 (5월)	.완료 .완료 .완료
다. 금융감독 전문성 강화	.금융그룹 총괄모니터링 전담 감독부서 지정(3월) .금융감독정책협의회 정례화(매분기) .내부거래정보에 대한 공시대상·범위 세분화 방안 마련(10월)	.완료 .정상추진 .정상추진
라. 금융권 M&A 촉진	.증권사 M&A촉진방안 마련('13.12월)	.완료

## 8 창조금융 활성화

실천과제	조치내용 및 일정	이행현황
가. 기술금융 인프라 구축	.기술평가 DB구축(7월)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출범(7월) .정책금융(기보보증, 정금공 온렌딩)이용시 기술신용정보 활용 의무화(7월)	.완료 .완료 .완료
나.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상장사다리 하위 펀드로 M&A펀드 조성(3,428억원) .신속이전상장제도 도입(6월) .크라우드펀딩 도입(자본시장법 국회 계류중)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2월)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활성화 ('13년 500억원→'14년 700억원)	.완료 .완료 .추진중 .완료 .계획대비 90% 투자실행 예상
다.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	.IPO 활성화 개선방안 마련(4월) .상장지수증권(ETN) 도입(11월) .펀드슈퍼마켓 도입(4월) .소득공제 장기펀드 도입(3월)	.완료 .완료 .완료 .완료

9 미래 유망 금융서비스 육성

실천과제	조치내용 및 일정	이행현황
<p>가. 노후 보장연금보험 활성화</p>	<p>.新연금보험 상품 개발(12월)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9월) .주택연금 공급 확대(3월) .보험일괄조회 시스템 구축(12월) .종합연금포탈(15.상) 구축</p>	<p>.정상추진 .완료 .정상추진 .완료 .정상추진</p>
<p>나. PEF 등 사모펀드 육성</p>	<p>.사모펀드 규율체계 개편 (자본시장법 국회 계류중) .사모펀드의 운용 자율성 제고 (자본시장법 국회 계류중) .전업 PEF에 대한 대기업집단 규제 합리화 (자본시장법 국회 계류중)</p>	<p>.추진중 .추진중 .추진중</p>
<p>다. 글로벌 금융 추진</p>	<p>.제3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8월) .외국계 금융회사 출입국 우대혜택 확대(10월) .법인인식기호(LFI)의 국내발급기관 선정(10월) .민-관 네트워크 구축(2월)</p>	<p>.완료 .완료 .완료 .완료</p>